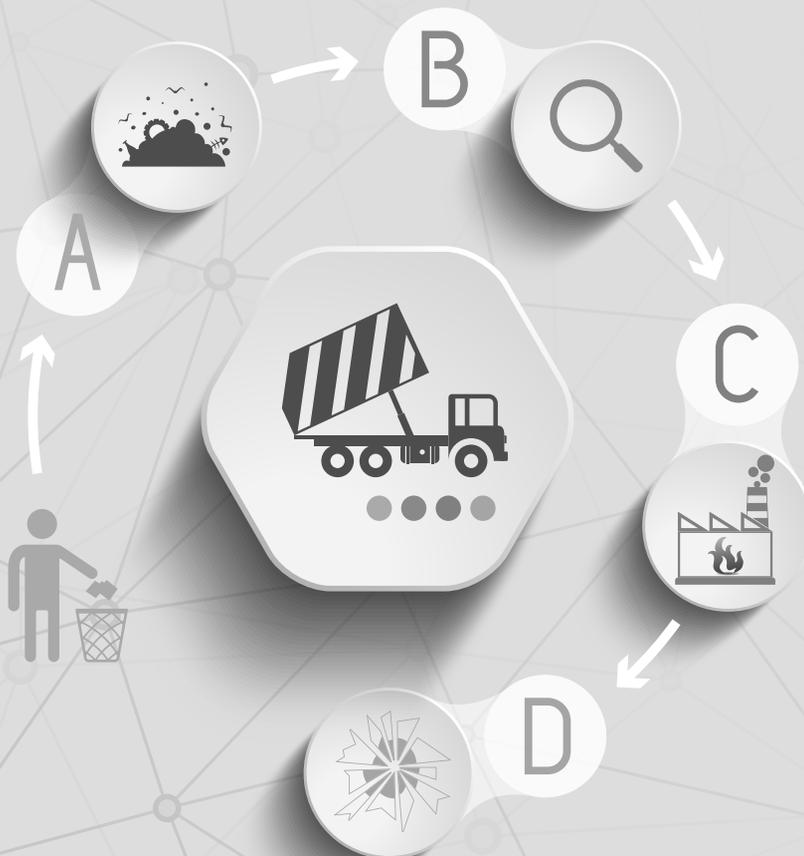


폐기물 분류체계 및 분류방법 설명서

2017



폐기물 분류체계 및 분류방법 설명서

2017

〈유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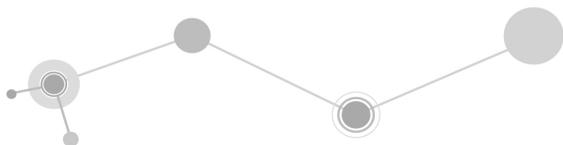
- ❖ 본 설명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 제13411호, 2016.7.21. 시행)으로 폐기물의 분류체계 및 분류방법이 종전과 달라짐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 및 시·도(시·군·구)의 폐기물 업무 담당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법적인 업무 수행에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 ❖ 본 설명서에 명시된 내용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폐기물의 용어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의 유권 해석이 우선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1.1 설명서 제정 배경	3
1.2 적용범위	4
1.3 사업장폐기물 분류체계 개정사항	5
제2장 폐기물의 종류	9
2.1 지정폐기물	11
2.2 사업장 일반폐기물	14
2.3 폐기물 신·구 대조표	15
제3장 업종별 주요 발생 폐기물	33
3.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업종번호)	35
3.2 업종별 사업장폐기물 분류	37
제4장 폐기물 분류절차 및 배출자 신고	39
4.1 분류절차도(지정/사업장일반)	41
4.2 폐기물 분류절차	43
4.2.1 단계 1 : 발생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	44
4.2.2 단계 2 : 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한다	46
4.2.3 단계 3 : 지정폐기물 여부를 확인한다	47

4.2.4 단계 4 : 폐기물 분류번호를 부여한다.	48
4.2.5 단계 5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대상여부를 확인한다.	49
4.3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방법	53
4.4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작성방법(사업장일반폐기물 신고)	58
4.5 경과 규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부칙)	67
제5장 부록	69
부록 1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71
부록 2 폐기물 분류항목명 및 내용설명	83
부록 3 업종별 사업장폐기물 분류	140
부록 4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9차)	223

제1장 일반사항



제1장 일반사항

1.1 설명서 제정 배경

유해(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관리·처리하지 않거나 환경에 유출될 경우 그 유해성으로 인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 독일 등 선진 외국은 배출공정, 유해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해폐기물의 분류를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폐기물 분류체계를 기존 152종에서 폐기물 배출공정, 유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260종(지정폐기물 95종, 사업장 일반폐기물 165종)으로 폐기물의 종류 및 분류번호를 세분화(2016.7.21)하였다.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을 세분화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도록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였다.

동 설명서는 개선된 폐기물의 종류 및 분류번호, 업종별 주요 발생 폐기물, 폐기물 판단절차,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방법, 부록을 정리하여 폐기물 업무 담당자 및 관련업체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이다.

1.2 적용범위

본 「폐기물 판단절차 및 분류방법 설명서」의 적용 범위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제3조(적용 범위), 제17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폐기물의 판단절차 및 분류방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아래 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정리하였다.

【폐기물관리법 규정사항】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제2조 사업장의 범위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제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제2조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제2조의2 폐기물의 세부분류	-	제4조의2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제3조 적용 범위	-	-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제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제18조의2 지정 폐기물 처리 계획의 확인

1.3 사업장폐기물 분류체계 개정사항

○ 폐기물별 안전관리 및 재활용유형 마련을 위해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분류 세분화 및 신규 폐기물(분류번호)을 추가 하였다.

○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세분화, 신설 등을 통해 분류 체계를 개선하였다.

(기존, 152종 → 개선, 260종, 108종 증가)

※ 지정폐기물 76종→95종, 사업장일반폐기물 76종→165종

【폐기물 분류체계 비교】

구분	기 존	개 정
분류번호	152종	260종
대분류	지정폐기물 11항목(01~11) 사업장일반폐기물 1항목(51)	지정폐기물 11항목(01~10, 30) 사업장일반폐기물 1항목(51)
중분류	지정 33종, 사업장일반 38종	지정 35종, 사업장일반 46종
소분류	세부 폐기물종류(152종) (지정 76종, 사업장일반 76종)	세부 폐기물종류(260종) (지정 95종, 사업장일반 165종)

※ 생활폐기물 25종 신설(2016. 7. 21) : 82쪽 참조

- (지정폐기물) 기존 76종에서 재활용 등을 고려하여 총 95종으로 세분화(19종 증가)
- (예시)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기존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수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페놀수지, 폴리우레탄, 그 밖의 합성수지, 합성고무로 분류하던 것을 폐폴리스티렌, 폐아크리로나이트릴브타디엔스티렌(ABS 수지)을 추가하여 세분화함

【개선 전·후 비교표(예시)】

〈기 존〉		〈개 정〉	
분류번호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분류번호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01 00 00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 01 00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 01 01	폴리에틸렌	01-01-01	폐폴리에틸렌
01 01 02	폴리프로필렌	01-01-02	폐폴리프로필렌
01 01 03	폴리염화비닐수지	01-01-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
01 01 04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01-01-04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01 01 05	페놀수지	01-01-05	폐페놀수지
01 01 06	폴리우레탄	01-01-06	폐폴리우레탄
01 01 07	그 밖의 합성수지	-	<이 동>
01 01 08	합성고무	01-01-07	폐합성고무
-	<신 설>	01-01-08	폐폴리스티렌
-	<신 설>	01-01-09	폐아크리로나이트릴브타디엔스티렌 (ABS 수지)
-	<이 동>	01-01-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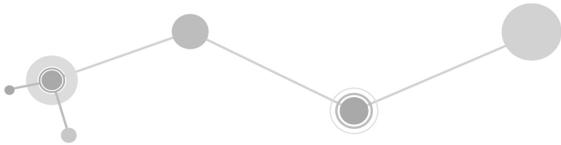
□ (사업장일반폐기물) 기존 76종에서 재활용 등을 고려하여 총 165종으로 세분화
(89종 증가)

- (세분화 예시) 동·식물성잔재물의 경우 기존에 동물의 사체,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로 분류하던 것을 축산물가공잔재물, 수산물가공잔재물, 폐패각, 폐모피류, 피혁가공잔재물, 동물털, 동물성유지류,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주정박, 맥주박, 유박유잔재물, 초본류,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을 추가하여 세분화함
- (신규추가) 폐사료, 폐소화기류, 폐전지류, 폐의약품류, 폐흑연가루, 나노폐기물, 폐차발생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을 신규로 추가함

【개선 전·후 비교표(예시)】

〈기 존〉		〈개 정〉	
분류번호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분류번호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51 17 00	동·식물성잔재물	51-17	동·식물성잔재물
51 17 01	동물의 사체	51-17-01	동물사체
51 17 02	동물성잔재물	-	〈삭 제〉
51 17 03	식물성잔재물	-	〈삭 제〉
-	〈신 설〉	51-17-02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한다)
-	〈신 설〉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	〈신 설〉	51-17-04	폐패각
-	〈신 설〉	51-17-05	폐모피류
-	〈신 설〉	51-17-06	피혁가공잔재물
-	〈신 설〉	51-17-07	동물털
-	〈신 설〉	51-17-08	동물성유지류
-	〈신 설〉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	〈신 설〉	51-17-21	주정박
-	〈신 설〉	51-17-22	맥주박
-	〈신 설〉	51-17-23	유박유잔재물
-	〈신 설〉	51-17-24	초본류
-	〈신 설〉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	〈신 설〉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제2장 폐기물의 종류



제2장 폐기물의 종류

2.1 지정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1종의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별표 1] <개정 2016.1.19.>

지정폐기물의 종류 (제3조 관련)

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가.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 1) 폐합성 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 2)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 나.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1) 폐수처리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 공정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다.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부식성 폐기물
 - 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나.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가. 광재(鑛滓)[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高爐)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 나. 분진(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廢砂)
 - 라.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재별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 마. 소각재
 - 바.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 사. 폐촉매
 - 아.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유·동물유 및 식물유(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는 과정, 식용유를 유통·사용하는 과정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廢土砂)를 포함한다]
 - 자. 폐형광등의 파쇄물(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폐유기용제
 - 가. 할로젠족(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한정한다)
 - 나. 그 밖의 폐유기용제(가목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5. 폐페인트 및 페락카(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가. 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락카 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塗裝)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
 - 나. 페인트 보관용기에 남아 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 다. 폐페인트 용기(용기 안에 남아 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 바닥에서 6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6. 폐유[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함유 폐기물, 폐식용유와 그 잔재물,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한다]
7. 폐석면
 - 가.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뿔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하는 것
 - 나.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뿔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 가.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나.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9. 폐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제1호 다목의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의 부식성 폐기물, 제4호의 폐유기용제 및 제8호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은 제외한다]
10. 의료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1.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2.2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우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유해물질 기준치 이상 함유하지 않은 오폐수·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폐도자기 조각·소각재·안정화 또는 고흡화·고화 처리물, 폐촉매 및 폐형광등 파쇄물 등이 있고, 또한, 폐석고 및 폐석회, 폐석재류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를 참고하면 된다.

2.3 폐기물 신·구 대조표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 152종의 폐기물에 대하여 사업장폐기물의 안전관리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 260종의 폐기물로 세분화 또는 신규폐기물을 추가하였다.

본 개정에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존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및 분류번호에 대한 개정은 아래 표와 같다.

- 폐기물별 안전관리 및 재활용유형 마련을 위해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분류 세분화 및 신규 폐기물을 추가 하였다.
- 분류번호의 경우 대분류 또는 중분류를 기존 6자리(00-00-00)표현에서 대분류 2자리(00), 중분류 4자리(00-00) 표현하였다. 단, 하위분류가 없는 폐기물의 경우 6자리(00-00-00)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현 하였다.

【개선 전·후 비교표(예시)】

구분	폐기물 종류	기 준	개 정	분류번호 사용여부
대분류	의료폐기물	10-00-00	10	×
중분류	격리의료폐기물	10-11-00	10-11-00	○
	위해의료폐기물	10-12-00	10-12	×
소분류	조직물류폐기물	10-12-01	10-12-01	○

- 세분화된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종류마다 그 밖의 폐기물은 분류번호 99번으로 구분(중분류의 경우 00-99, 소분류의 경우 00-00-99)하여 향후 추가될 폐기물에 대한 분류번호 자리를 남겨 두었다.
- 각각의 폐기물 명칭에 대해 폐기물임을 의미하기 위해 물질명 앞에 “폐” (폐000)를 붙여 통일화하였다.
- 기존 서술적 표현의 폐기물 명칭을 간단·명료하게 수정하였다.

【사업장폐기물의 신·구 대조표】

기 존	개 정
<p>[별표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 (제2조의2 관련)</p> <p>1.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p> <p>01-00-00: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p> <p>01-01-00 폐합성고분자화합물</p> <p>01-01-01 폴리에틸렌</p> <p>01-01-02 폴리프로필렌</p> <p>01-01-03 폴리염화비닐수지</p> <p>01-01-04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 <p>01-01-05 폐놀수지</p> <p>01-01-06 폴리우레탄</p> <p>01-01-07 그 밖의 합성수지</p> <p>01-01-08 합성고무</p> <p><신설></p> <p><신설></p> <p><이동></p>	<p>[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제4조의2제1항 관련)</p> <p>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p> <p>0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p> <p>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p> <p>01-01-01 폐폴리에틸렌</p> <p>01-01-02 폐폴리프로필렌</p> <p>01-01-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p> <p>01-01-04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 <p>01-01-05 폐페놀수지</p> <p>01-01-06 폐폴리우레탄</p> <p><이동></p> <p>01-01-07 폐합성고무</p> <p>01-01-08 폐폴리스티렌</p> <p>01-01-09 폐아크리로나이트릴브타디엔 스티렌(ABS 수지)</p> <p>01-01-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p>
<p>01-02-00 오니류</p> <p>01-02-01 폐수처리 오니</p> <p>01-02-02 공정 오니</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01-02 오니류</p> <p>01-02-01 폐수처리오니</p> <p><삭제></p> <p>01-02-02 유리식각공정오니</p> <p>01-02-03 제지공정오니</p> <p>01-02-04 실리콘제조공정오니</p> <p>01-02-05 보크사이트잔재물</p> <p>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p>
<p>01-03-00 폐농약</p> <p>01-03-01 유기인계 농약</p> <p>01-03-02 유기염소계 농약</p> <p>01-03-03 카바메이트계 (Carbamate) 농약</p>	<p>01-03 폐농약</p> <p>01-03-01 유기인계폐농약</p> <p>01-03-02 유기염소계폐농약</p> <p>01-03-03 카바메이트계 (Carbamate)폐농약</p>

기 존	개 정
01-03-04 그 밖의 농약 <이동> 01-04-00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이동> 01-03-99 그 밖의 폐농약 <삭제>
02-00-00: 부식성폐기물 02-01-00 폐산 02-01-01 염산 02-01-02 황산 02-01-03 그 밖의 폐산 <신설> <신설> <신설> <이동> 02-02-00 폐알칼리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02 부식성폐기물 02-01 폐산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 폐축전지를 포함한다) <이동>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05 LCD·반도체공정의 폐산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 폐알칼리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00-00: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00 광재(鑛滓) 03-01-01 알루미늄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광재 03-01-02 납 열처리와 야금(冶金) 공정 에서 발생한 광재 03-01-03 아연 열처리 공정에서 발생한 광재 03-01-04 그 밖에 달리 분류되지 아니 하는 광재	0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 광재(鑛滓) 03-01-01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03-01-02 납 열처리·야금(冶金)공정광재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이동>

기 존	개 정
<신설>	03-01-04 철제조공정광재(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는 제외한다)
<이동>	03-01-99 그 밖의 광재
03-02-00 분진	03-02-00 분진
03-03-00 폐주물사 및 폐사 03-03-01 폐주물사 03-03-02 폐사 <신설> <신설> <이동> <신설>	03-03 폐주물사 및 폐사 <삭제> <이동> 03-03-01 점토점결폐주물사 03-03-02 화학점결폐주물사 03-03-03 샌드블라스트폐사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03-04-00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03-04-01 내화물 03-04-02 도자기 조각	03-04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03-04-01 폐내화물 03-04-02 폐도자기조각
03-05-00 소각재 03-05-01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03-05-02 그 밖에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03-05-03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03-05-04 그 밖에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03-05-05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	03-05 소각재 03-05-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 (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기 존	개 정
<p>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p> <p>03-05-06 그 밖에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p>	<p>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 (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p>
<p>03-06-00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p> <p>03-06-01 안정화 처리물</p> <p>03-06-02 시멘트 고형화 처리물</p> <p>03-06-03 고화 처리물</p> <p>03-06-04 킬레이트(Chelate) 처리물</p> <p>03-06-05 폐석면 고형화 처리물(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로 한정한다)</p> <p>03-06-06 그 밖의 고형화 처리물</p> <p><이동></p>	<p>03-06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p> <p>03-06-01 안정화처리물</p> <p>03-06-02 시멘트고형화처리물</p> <p>03-06-03 고화처리물</p> <p>03-06-04 킬레이트(Chelate) 처리물</p> <p>03-06-05 폐석면고형화처리물(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로 한정한다)</p> <p><이동></p> <p>03-06-99 그 밖의 고형화·고화처리물</p>
<p>03-07-00 폐촉매</p> <p><신설></p> <p><신설></p>	<p>03-07 폐촉매</p> <p>03-07-01 금속성폐촉매</p> <p>03-07-02 비금속성폐촉매</p>
<p>03-08-00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p> <p>03-08-01 폐흡착제</p> <p>03-08-02 폐흡수제</p>	<p>03-0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p> <p>03-08-01 폐흡착제</p> <p>03-08-02 폐흡수제</p>
<p>03-09-00 폐형광등 파쇄물(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p>	<p>03-09-00 폐형광등 파쇄 잔재물</p>
<p>04-00-00: 폐유기용제</p> <p>04-01-00 할로젠족 유기용제</p> <p>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p>	<p>04 폐유기용제</p> <p>04-01-0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p> <p>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p>
<p>05-00-00: 폐페인트 및 페락카</p> <p>05-01-00 유성페인트</p>	<p>05 폐페인트 및 페락카</p> <p>05-01-00 폐유성페인트</p>

기 존	개 정
05-02-00 수성페인트 05-03-00 락카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폐락카
06-00-00: 폐유 06-01-00 폐광물유 06-01-01 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2 연마유·절삭유(금속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처리용유 및 비수용성 절삭유 등을 말한다) 06-01-03 기계유·작동유(주로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연료유 06-01-05 폐오일 필터 06-01-06 그 밖의 광물유[아스팔트유·전기절연유·그리스(grease) 및 방청유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30퍼센트 이상의 수분이 함유되거나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신설> <신설> <이동>	06 폐유 06-01 폐광물유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폐절삭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05 폐오일필터 <이동> 06-01-06 기름함유 폐전선·폐케이블 06-01-07 폐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함유 폐기물을 제외한다)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

기 존	개 정
<p>06-02-00 폐동식물유</p> <p>06-03-00 그 밖에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유</p>	<p>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p> <p>06-02-00 폐동식물유</p> <p>06-03-00 그 밖의 폐유</p>
<p>07-00-00: 폐석면</p> <p>07-01-00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뿔칠로 사용된 것을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하는 것</p> <p>07-01-01 슬레이트 등 고형화되어 있어 훔탈릴 우려가 없는 것</p> <p>07-01-02 분진, 부스러기 등 훔탈릴 우려가 있는 것</p> <p>07-02-00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p> <p>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 비닐시트(뿔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p> <p>07-04-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p>	<p>07 폐석면</p> <p>07-01 제품·설비(뿔칠로 사용된 것을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하는 폐석면</p> <p>07-01-01 훔탈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p> <p>07-01-02 훔탈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p> <p>07-02-00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p> <p>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집진필터 등</p> <p><삭제></p>
<p>08-00-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p>	<p>0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p>

기 존	개 정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08-02-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 08-03-00 기타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의 것 08-04-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이 아닌 것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08-02-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 08-03-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함유 액상의 것 08-04-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이 아닌 것
09-00-00: 폐유독물질 <신설> <신설> <신설>	09 폐유독물질 09-01-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09-02-00 연구·검사용폐시약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10-00-00: 의료폐기물 10-11-00 격리의료폐기물 10-12-00 위해의료폐기물 10-12-01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2-02 병리계폐기물 10-12-03 손상성폐기물 10-12-04 생물·화학폐기물 10-12-05 혈액오염폐기물 10-12-06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10 의료폐기물 10-11-00 격리의료폐기물 10-12 위해의료폐기물 10-12-01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2-02 병리계폐기물 10-12-03 손상성폐기물 10-12-04 생물·화학폐기물 10-12-05 혈액오염폐기물 10-12-06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11-00-0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이동>	<이동> 30-00-0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기 존	개 정
<p>2.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의 분류 번호</p> <p>51-01-00 유기성오니류</p> <p>51-01-01 폐수처리오니</p> <p>51-01-02 공정오니</p> <p>51-01-03 정수처리오니</p> <p>51-01-04 하수처리오니</p> <p>51-01-05 분뇨·가축분뇨처리오니</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 번호</p> <p>51-01 유기성오니류</p> <p><삭제></p> <p><삭제></p> <p>51-01-01 정수처리오니</p> <p>51-01-02 하수처리오니</p> <p><삭제></p> <p>51-01-03 분뇨처리오니</p> <p>51-01-04 가축분뇨처리오니</p> <p>51-01-05 펄프·제지공정오니</p> <p>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p> <p>51-01-07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p> <p>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p> <p>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p>
<p>51-02-00 무기성오니류</p> <p>51-02-01 폐수처리오니</p> <p>51-02-02 공정오니</p> <p>51-02-03 정수처리오니</p> <p>51-02-04 하수처리오니</p> <p>51-02-05 하수준설토</p> <p>51-02-06 건설오니</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51-02 무기성오니류</p> <p>51-02-01 폐수처리오니</p> <p><삭제></p> <p>51-02-02 정수처리오니</p> <p>51-02-03 하수처리오니</p> <p>51-02-04 하수준설토</p> <p>51-02-05 건설오니</p> <p>51-02-06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석재·골재 생산 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로 한한다)</p> <p>51-02-07 유리식각공정오니</p> <p>51-02-08 실리콘공정오니</p> <p>51-02-09 보크사이트잔재물</p> <p>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p> <p>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p>

기 존	개 정
51-03-00 폐합성고분자화합물 51-03-01 폐합성수지류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기타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이동>	51-0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이동>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5 양식용폐부자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08 폐어망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4-00 광재류 51-04-01 고로슬래그 51-04-02 제강슬래그 51-04-03 기타 광재류 <신설> <신설> <이동>	51-04 광재류 51-04-01 고로슬래그 51-04-02 제강슬래그 <이동> 51-04-03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51-04-04 선광공정광재 51-04-99 그 밖의 광재류
51-05-00 분진(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에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51-05 분진류(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 51-05-01 제철공정분진 51-05-02 시멘트제조공정분진 51-05-03 발전시설분진 51-05-04 폐실리카 폼(규소철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을 말한다) 51-05-99 그 밖의 분진

기 존	개 정
51-06-00 폐주물사 및 폐사 51-06-01 폐주물사 51-06-02 폐사(샌드블라스트 폐사) <신설> <신설> <이동> <신설> <신설>	51-06 폐주물사 및 폐사 <삭제> <이동>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51-06-02 화학점결폐주물사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51-06-04 폐여과사 51-06-99 그 밖의 폐사
51-07-00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 조각 51-07-01 폐내화물 51-07-02 폐도자기 조각	51-07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51-07-01 폐내화물 51-07-02 폐도자기조각
51-08-00 소각재 51-08-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51-08-02 그 밖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51-08-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51-08-04 그 밖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51-08-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51-08-06 그 밖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51-08 소각재 51-08-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 (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 (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기 존	개 정
51-09-00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51-09-01 안정화 처리물 51-09-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51-09-03 고화 처리물 51-09-04 킬레이트(Chelate) 처리물 51-09-05 그 밖의 고형화 처리물 <이동>	51-09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51-09-01 안정화 처리물 51-09-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51-09-03 고화 처리물 51-09-04 킬레이트(Chelate) 처리물 <이동> 51-09-99 그 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51-10-00 폐촉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51-10 폐촉매 51-10-01 금속성폐촉매 51-10-02 페이온교환수지 51-10-03 폐멤브레인수지 51-10-99 그 밖의 폐촉매
51-11-00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신설>	51-11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51-12-00 폐석고 및 폐석회 51-12-01 폐석고 51-12-02 폐석회	51-12 폐석고 및 폐석회 51-12-01 폐석고 51-12-02 폐석회
51-13-00 연소잔재물 <신설> <신설> <신설> <신설>	51-13 연소잔재물 51-13-01 연탄재 51-13-02 액체연료연소재 51-13-03 석탄재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4-00 폐석재류 <신설> <신설>	51-14 폐석재류 51-14-01 폐석분토사(석재·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응집 미립분을 포함한다) 51-14-02 폐석재

기 존	개 정
51-15-00 페타이어 <신설> <신설>	51-15 페타이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15-01 자동차 페타이어 51-15-02 그 밖의 페타이어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 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 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51-17-00 동·식물성잔재물(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51-17-01 동물의 사체 51-17-02 동물성잔재물 51-17-03 식물성잔재물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51-17 동·식물성잔재물(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 한다) 51-17-01 동물사체 <삭제> <삭제> 51-17-02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한다)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51-17-04 폐패각 51-17-05 폐모피류 51-17-06 피혁가공잔재물 51-17-07 동물털 51-17-08 동물성유지류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51-17-21 주정박 51-17-22 맥주박 51-17-23 유박유잔재물 51-17-24 초본류

기 존	개 정
<신설>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신설>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51-18-00 폐전기전자제품류	51-18 폐전기전자제품류
<신설>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신설>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신설>	51-18-03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
<신설>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19-00 왕겨 및 쌀겨	51-19-00 왕겨 및 쌀겨
51-20-00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51-20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51-20-04 1등급	<삭제>
51-20-05 2등급	<삭제>
51-20-06 3등급	<삭제>
<신설>	51-20-01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신설>	51-20-0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피, 톱밥, 대패밥 등을 말한다)
<신설>	51-20-03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 상태의 깨끗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신설>	51-20-04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신설>	51-20-05 목재가공공장 부산물(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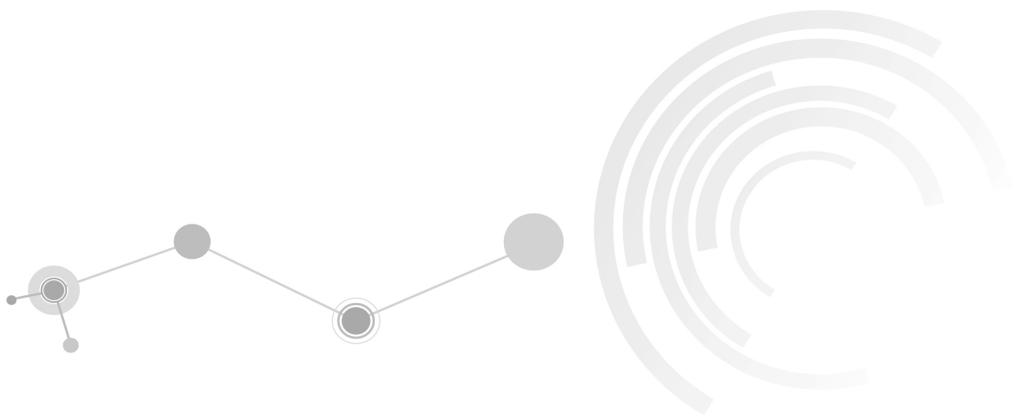
기 존	개 정
<신설>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 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신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 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신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 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신설>	51-20-09 산업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신설>	51-20-10 건축현장 폐목재(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신설>	51-20-11 건축현장 폐목재(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신설>	51-20-12 건축현장 폐목재(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신설>	51-20-13 폐받침목
<신설>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51-21-00 폐토사류 51-21-01 폐토사 51-21-02 건설폐토석 <신설>	51-21 폐토사류 51-21-01 폐토사 51-21-02 건설폐토석 51-21-03 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

기 존	개 정
51-22-00 폐콘크리트 <신설> <신설>	51-22 폐콘크리트류 51-22-01 폐콘크리트 51-22-02 콘크리트폐받침목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51-24-00 폐벽돌	51-24-00 폐벽돌
51-25-00 폐블록	51-25-00 폐블록
51-26-00 폐기와	51-26-00 폐기와
51-27-00 폐섬유 51-27-01 폐천연섬유 51-27-02 폐합성섬유 <신설> <신설>	51-27 폐섬유류 51-27-01 폐천연섬유 51-27-02 폐합성섬유 51-27-03 폐의류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28-00 폐지류 <신설> <신설> <신설>	51-28 폐지류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8-02 폐종이류 51-28-03 폐벽지
51-29-00 폐금속류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51-29 폐금속류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9-04 폐금속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51-30-00 폐유리	51-30 폐유리류

기 존	개 정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51-30-01 폐유리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0-03 폐스마트유리 51-30-04 폐유리섬유 51-30-05 폐형광등과쇄잔재물 51-30-99 그 밖의 폐유리
51-31-00 폐타일	51-31-00 폐타일
51-32-00 폐보드류	51-32-00 폐보드류
51-33-00 폐판넬	51-33-00 폐판넬
51-35-00 폐전주(폐전주를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51-35-00 폐전주(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51-36-00 폐가스 포집물 51-36-01 이산화탄소 스트림 51-36-02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	51-36 폐가스포집물 51-36-01 이산화탄소스트림 51-36-02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51-37-00 폐냉매물질 51-37-01 폐가전제품에서 회수한 폐냉매물질 51-37-02 폐자동차에서 회수한 폐냉매물질 51-37-03 그 밖의 폐냉매물질 <신설> <이동>	51-37 폐냉매물질 51-37-01 가전제품회수폐냉매물질 51-37-02 자동차회수폐냉매물질 <이동>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51-37-99 그 밖의 폐냉매물질
51-38-00 음식물류 폐기물 및 처리물 51-38-01 음식물류 폐기물 51-38-02 음식물류 폐기물의 중간가공 폐기물 51-38-0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 (액상의 경우만 해당하되, 중간가공 폐기물은 제외한다)	51-38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51-38-01 음식물류폐기물 51-38-02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51-38-0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액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기 존	개 정
51-38-04 그 밖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 〈이동〉	〈이동〉 51-38-99 그 밖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
〈신설〉	51-39-00 폐사료
〈신설〉	51-40 폐소화기류 51-40-01 폐분말소화기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신설〉	51-41 폐전지류 51-41-01 1차폐전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41-02 2차폐전지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 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는 제외한다) 51-41-04 폐태양전지·전자기기폐이스트
〈신설〉	51-42-00 폐의약품류
〈신설〉	51-43-00 폐흑연가루
〈신설〉	51-44-00 나노폐기물(나노물질을 제조·가공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신설〉	51-45 폐차발생폐기물 51-45-01 폐차파쇄잔재물 51-45-02 폐차부품류 51-45-99 그 밖의 폐차발생폐기물
〈신설〉	51-46-00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
51-99-00 그 밖의 폐기물	51-99-00 그 밖의 폐기물

제3장 업종별 주요 발생 폐기물



제3장 업종별 주요 발생 폐기물

3.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업종번호)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와 관련하여 별표 4에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폐기물의 발생원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관리를 유도 하였다.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이 반영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11호)를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업종을 확인하고,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서 작성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업종명(업종번호)을 사용하면 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예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01	농업	011	작물 재배업	011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 배업	01110	곡물 및 기타 식 량 작 물 재배업
						0112	채소, 화훼 작물 및 종묘 재배업	01121	채 소 작 물 재배업
								01122	화 훼 작 물 재배업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3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01131	과 실 작 물 재배업
								01132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0114	기타 작물 재배업	01140	기타 작물 재배업
						0115	시 설 작 물 재배업	01151	콩나물 재배업
								01152	채소, 화훼 및 과 실 작 물 시설 재배업
								01159	기타 시설 작물 재배업
				012	축산업	0121	소 사육업	01211	젖소 사육업
								01212	육우 사육업
						0122	양돈업	01220	양돈업
						0123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01231	양계업
								01239	기타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3.2 업종별 사업장폐기물 분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배출되는 폐기물의 올바른 분류를 위해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된 업종별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참고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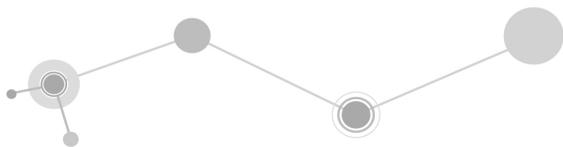
업종별 사업장폐기물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76개 업종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3,556종의 폐기물 종류를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 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업종별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는 부록에 별도 수록하였으며, 그 예로 아래표에 제시하였다.

【업종별 사업장폐기물 분류(예시)】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농업 (01)	지정 폐기물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05	폐오일필터	
		06-03-00	그 밖의 폐유	
		07-01-01	훅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	
		07-01-02	훅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집진필터 등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4	가축분뇨처리오니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13-01	연탄재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7-01	동물사체	
		51-17-24	초분류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9-00	왕겨 및 쌀겨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51-27-02	폐합성섬유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39-00	폐사료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의 분류번호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 부여	
	임업 (02)	지정 폐기물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3-00	그 밖의 폐유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20-01	입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의 분류번호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 부여	

제4장 폐기물 분류절차 및 배출자 신고



제4장 폐기물 분류절차 및 배출자 신고

4.1 분류절차도(지정/사업장일반)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판정하는 절차와 폐기물 분류번호를 부여하는 흐름도를 【사업장폐기물 분류절차】에 요약 정리하였다.

0. 폐기물을 분류하기 위한 참고사항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를 확인하고 해당업종의 주요 발생폐기물을 확인한다.(부록3 참조)

1. 발생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 폐기물 및 적용범위(법 제3조)를 확인한다.

2. 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폐기물 종류 중 어느 폐기물로 분류되는지를 확인한다.

3. 지정폐기물 여부를 확인한다.

- 폐기물의 종류와 유해물질 함유기준(용출, 함량, 성상 등) 해당여부 등으로 판정한다.

4. 폐기물 분류번호를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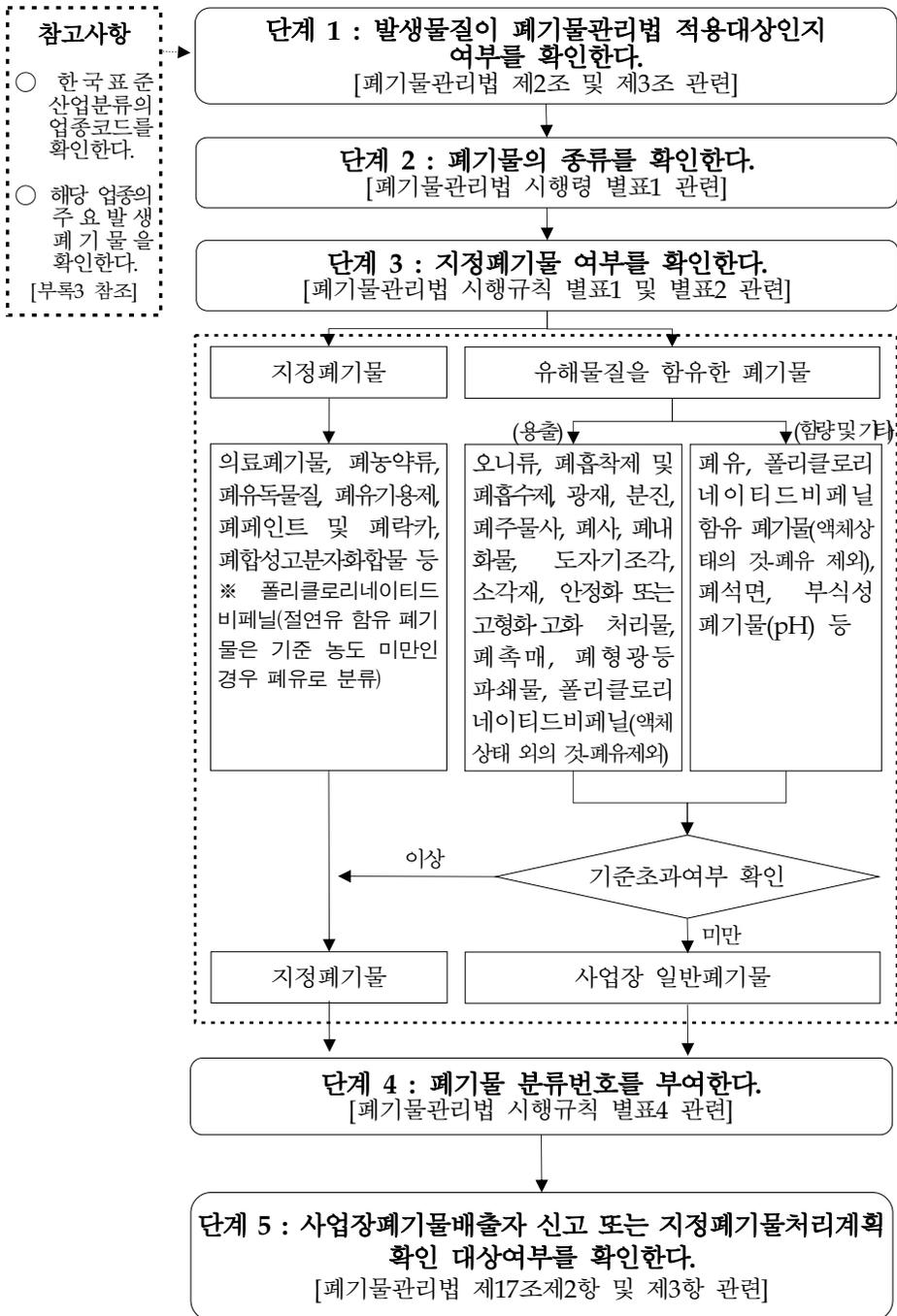
- 지정 및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분류번호를 부여한다.

5.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대상여부를 확인한다.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지정 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한다.

이 절차는 일반 지침이며 지정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 판정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 분류절차】



4.2 폐기물 분류절차

참고사항 : 폐기물을 분류하기 위한 참고사항

사업장에서 발생된 물질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폐기물에 대한 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 분류에 대한 사전검토는 부록 3을 이용하여 본 사업장과 유사업종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폐기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을 사전 예측하고, 다음 단계 5에 따른 검토사항을 통하여 폐기물을 분류할 수 있다.

부록 3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코드 2자리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주요발생 폐기물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특정공정 또는 제조공정과 상관없이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를 참고하여 폐기물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해 부록 3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어떤 중분류로 분류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업종구분이 확인된 경우 업종에 대한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 폐기물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시된 폐기물의 종류는 업종에 대한 대표적인 폐기물로서 참고사항이며, 다음 단계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2.1 단계 1 : 발생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이와 같이 폐기물은 당해 물건의 소유자인 배출자의 관점에서 정의되는 것으로서 배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유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출자가 제품의 제조공정상의 문제 또는 취급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생산제품이 상품으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역시 폐기물로 분류되게 된다.

해석사례

- 원목 제재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피(나무껍데기) 또는 톱밥이 폐기물인지?
☞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한 물질로 정의함.
따라서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수피와 톱밥은 폐기물에 해당함
- 동(銅)제련 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슬래그를 밀폐된 연속공정을 통해 시멘트 제조, 콘크리트 골재생산 공정의 원료로 투입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규격 또는 품질에 적합하게 제조하여 판매 중인데 해당 슬래그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 동 제련 공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인 슬래그를 별도 가공·처리없이 슬래그 발생 시설에서 연속공정으로 다른 제품 제조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보기 어려움

※ 출처 : 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2014.12)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적용범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8.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9.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4.2.2 단계 2 : 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한다.

폐기물에 유해성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구성성분을 파악해야 한다.

폐기물의 구성성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를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세부분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 제3조에서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별표 1관련

- ①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② 부식성 폐기물
- ③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 ④ 폐유기용제
- ⑤ 페페인트 및 페락카
- ⑥ 폐유
- ⑦ 폐석면
- ⑧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 ⑨ 폐유독물
- ⑩ 의료폐기물
- ⑪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4.2.3 단계 3 : 지정폐기물 여부를 확인한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구성성분을 확인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분석하여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만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에 관한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 시험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분석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현황 : 44개 기관(일반 16, PCBs 28, 중복 9), ('17년 3월 현재)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규제기준】

번호	유해물질	기준	비고
1	납 또는 그 화합물	3 mg/L	대상폐기물 : · 오니류, 폐흡착제, 폐흡수제 : 1~11항 ·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안정화 또는 고형화· 고화처리물, 폐촉매, 폐형광등 파쇄잔재물 : 1~7항, 11항, 12항 · 분진, 소각재 : 1~7항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 mg/L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5 mg/L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005 mg/L	
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3 mg/L	
6	6가크롬화합물	1.5 mg/L	
7	시안화합물	1.0 mg/L	
8	유기인화합물	1.0 mg/L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1 mg/L	
10	트리클로로에틸렌	0.3 mg/L	
11	기름성분	5 %	건조고형물 함량기준
12	석면	1 %	
13	할로젠족 해당 물질	5 %	①디클로로메탄~⑰1,1,2-트리클로로-1,2,2-트리플로로에탄 까지 17개 물질의 중량비

자료출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2 (2016)

4.2.4 단계 4 : 폐기물 분류번호를 부여한다.

단계 1에서 단계 3까지 폐기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제시된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분류 번호를 부여한다.

※ 폐기물의 분류는 폐기물 발생원, 성질과 상태 등을 감안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분류하나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항목으로 분류함

4.2.5 단계 4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대상여부를 확인한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출자 신고와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폐기물처리계획서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여기서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 중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를 포함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 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여부 확인은 폐지와 고철을 제외한 폐기물 전체 양을 기준으로 함(종류별의 양이 아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축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락카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축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톤 미만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제거 작업을 전부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은 제외한다)이 사업자를 갈음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5.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6.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7.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4.3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방법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사항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8.3., 2015.1.20.>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여기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0.10.18., 2011.9.27., 2013.5.31., 2015.7.29.>

1.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락카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축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톤 미만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제거 작업을 전부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은 제외한다)이 사업자를 갈음하여 지정 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5.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6.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7.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이때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별지 서식작성에 있어 “분류번호”에 변경된 분류번호를 기재하고 “업종”란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의 업종명 및 업종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올라로스시스템에도 동일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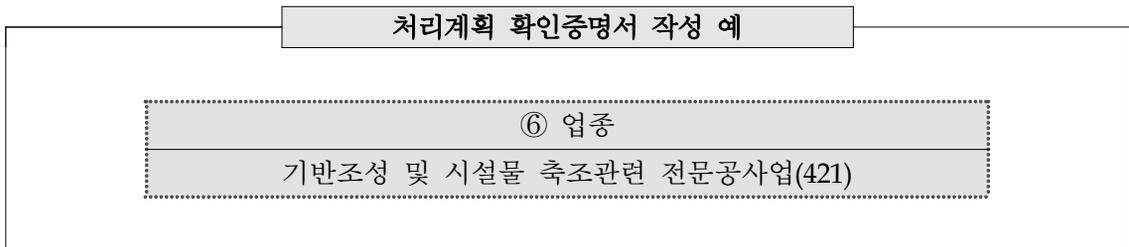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행정규칙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11호, 2015.9.24)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상에 있는 업종과는 다르며, 제조업의 경우 공장 등록증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명이 기재되어 있다.

※ 사업장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하는 폐석면(석면슬레이트)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명은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421)”으로 함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211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42110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유역(지방)환경청 등 담당공무원은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에 업종명과 업종코드를 반드시 적어 발급하여 배출자가 올바른시스템에 동일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4.17>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	----

제출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⑥ 업 종	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톤/년)

⑩ 폐기물 종류	⑪ 분류번호 □□-□□-□□	⑫ 배출량		⑬ 배출 주기	⑭ 성질 · 상태	⑮ 운반계획		⑯ 처리계획				
		kg/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⑰ 폐기물 운반방법	[]자 가	[]위 탁(업소명:)
------------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제7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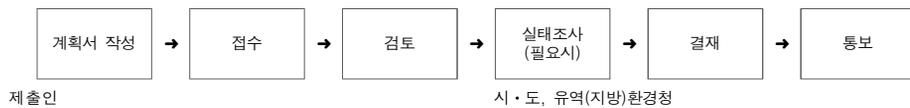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2.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부원료·첨가물의 투입점과 배출점을 표시합니다.
3. ⑩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적되,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종류를 함께 적습니다.
4.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5. ⑬란은 일별·월별·계절별로 구분하여 적고, 폐기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 배출주기를 명시합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6. ⑭란은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⑮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위탁운반하는 업소명을 적습니다.
8. ⑰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처리절차



4.4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작성방법(사업장일반폐기물 신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여기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 중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 중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6.30., 2011.9.27., 2014.1.17.>

1.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과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별지 서식작성에 있어 “분류번호”에 변경된 분류번호를 기재하고 “업종”란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의 업종명 및 업종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올라로시스템에도 동일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행정규칙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11호, 2015.9.24)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상에 있는 업종과는 다르며,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명이 기재되어 있다.

지자체 등 담당공무원은 배출자 신고증명서에 업종명과 업종코드를 반드시 적어 발급하여 배출자가 올라로시스템에 동일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또는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된 대부분의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에 해당되나, 그 중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에 해당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1.>

[] 신고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⑥ 업종	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

⑩ 폐기물			⑪ 성질 · 상태	⑫ 배출량		⑬ 운 반		⑭ 처 리			
구 분	종 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⑮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⑯ 변경 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8조제2항
[] 제18조제4항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신고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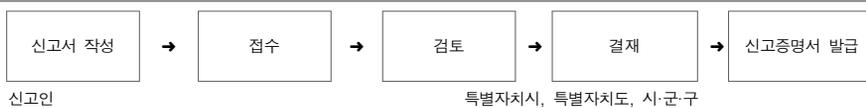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다.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방법

1. ㉔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2. ㉑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부원료·첨가물의 투입점과 폐기물의 배출점을 표시합니다.
3. ㉒란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4. ㉓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㉕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그 업소명을 적습니다.
6. ㉖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7.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㉑란부터 ㉕란까지, ㉖란 및 ㉗란만 적고,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신고서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발주자와의 관계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배출현장)	(전화번호:)	
	⑥ 업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공사명			⑨ 공사기간
⑩ 발주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

⑪ 폐기물			⑫ 배출량	⑬ 운 반		⑭ 처 리			
구분	종류	분류번호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							
		□□-□□-□□							
⑮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⑯ 폐기물 보관방법									
⑰ 변경 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⑱ 변경 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8조제2항
[] 제18조제4항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신고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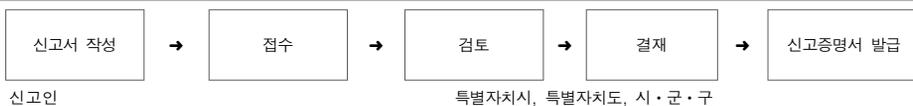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다.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작성방법

1. ⑤란은 폐기물이 배출되는 공사 또는 작업 현장의 주소를 적습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⑩란 중 구분란에는 "0"으로 적고, 종류란 및 분류번호란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4. ⑬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그 업소명을 적습니다.
5.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6.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⑦란까지, ⑰란 및 ⑱란만 적고,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1.2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신고서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⑥ 공동 수집 운반	대상업소명	폐기물			성질·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					
				□□-□□-□□					
				□□-□□-□□					
	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소재지)								

⑦ 공동 처리	대상업소명	폐기물			성질·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					
				□□-□□-□□					
				□□-□□-□□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재지	시설규격 (능력)(톤/일)	처리대상 폐기물	처리예상량 (톤/일)	방지시설 종류			

⑧ 공동 수집·운반 또는 처리사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⑨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

⑩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8조제2항
[] 제18조제4항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다.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적습니다.
2. ⑥란 중 폐기물의 구분란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폐기물의 종류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공동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으며, 성질·상태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위탁처리업소 현황란에는 위탁하려는 폐기물처리업소 또는 재활용신고업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3. ⑦란 중 대상업소명란에는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의 명칭을 적고, 폐기물의 종류란에는 2.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4. ⑧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하는 내용에 √ 표시를 합니다.
5.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⑤란까지, ⑨란 및 ⑩란만 적고,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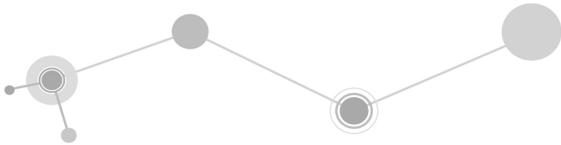
4.5 경과 규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
- 부칙 제6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폐기물의 종류	대상	제출서류	제출기관	제출기한
사업장 일반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증명서 ○ 개정된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017년 12월 31일 까지
지정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규칙 시행 당시 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 ※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증명서 ○ 개정된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이 규칙 시행('16.7.21) 이후 변경 신고·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개정된 별표4의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를 적용함

제5장 부록



제5장 부록

부록 1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별표 4] <개정 2016. 7. 21>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0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폐폴리에틸렌

01-01-02 폐폴리프로필렌

01-01-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

01-01-04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01-01-05 폐페놀수지

01-01-06 폐폴리우레탄

01-01-07 폐합성고무

01-01-08 폐폴리스티렌

01-01-09 폐아크리로나이트릴브타디엔스티렌(ABS수지)

01-01-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2 오니류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02 유리식각공정오니

01-02-03 제지공정오니

01-02-04 실리콘제조공정오니

01-02-05 보크사이트잔재물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 01-03 폐농약
 - 01-03-01 유기인계폐농약
 - 01-03-02 유기염소계폐농약
 - 01-03-03 카바메이트계(Carbamate)폐농약
 - 01-03-99 그 밖의 폐농약
- 02 부식성폐기물
 - 02-01 폐산
 - 02-01-01 폐염산
 -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 02-01-03 폐질산
 - 02-01-04 폐불산
 - 02-01-05 LCD · 반도체 공정의 폐산
 - 02-01-99 그 밖의 폐산
 - 02-02 폐알칼리
 - 02-02-01 폐가성소다수
 - 02-02-02 폐암모니아수
 -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 0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 03-01 광재(鑛滓)
 - 03-01-01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 03-01-02 납 열처리 · 야금(冶金)공정광재
 -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 03-01-04 철제조공정광재(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는 제외한다)
 - 03-01-99 그 밖의 광재
 - 03-02-00 분진
 - 03-03 폐주물사 및 폐사
 - 03-03-01 점토점결폐주물사
 - 03-03-02 화학점결폐주물사
 - 03-03-03 샌드블라스트폐사
 -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 03-04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 03-04-01 폐내화물
 - 03-04-02 폐도자기조각
- 03-05 소각재
 - 03-05-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 03-05-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 03-05-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 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 03-06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 03-06-01 안정화처리물
 - 03-06-02 시멘트고형화처리물
 - 03-06-03 고화처리물
 - 03-06-04 킬레이트(Chelate)처리물
 - 03-06-05 폐석면고형화처리물(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 03-06-99 그 밖의 고형화·고화처리물
- 03-07 폐촉매
 - 03-07-01 금속성폐촉매
 -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 03-0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03-08-01 폐흡착제
 - 03-08-02 폐흡수제
- 03-09-00 폐형광등 파쇄 잔재물
- 04 폐유기용제
 - 04-01-0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 05 페페인트 및 페락카
 - 05-01-00 폐유성페인트
 - 05-02-00 폐수성페인트
 - 05-03-00 페락카

06 폐유

06-01 폐광물유

-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폐절삭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 06-01-04 폐연료유
- 06-01-05 폐오일필터
- 06-01-06 기름함유 폐전선·폐케이블
- 06-01-07 폐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을 제외한다)
-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 06-02-00 폐동식물유
- 06-03-00 그 밖의 폐유

07 폐석면

- 07-01 제품·설비(뿔칠로 사용된 것을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하는 폐석면
 - 07-01-01 훔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
 - 07-01-02 훔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
- 07-02-00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집진필터 등

0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 08-02-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
- 08-03-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의 것
- 08-04-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이 아닌 것

09 폐유독물질

- 09-01-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 09-02-00 연구·검사용 폐시약
-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10 의료폐기물

10-11-00 격리의료폐기물

10-12 위해의료폐기물

10-12-01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2-02 병리계폐기물

10-12-03 손상성폐기물

10-12-04 생물·화학폐기물

10-12-05 혈액오염폐기물

10-12-06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30-00-0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51-01 유기성오니류

51-01-01 정수처리오니

51-01-02 하수처리오니

51-01-03 분뇨처리오니

51-01-04 가축분뇨처리오니

51-01-05 펄프·제지공정오니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

51-01-07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

51-02 무기성오니류

51-02-01 폐수처리오니

51-02-02 정수처리오니

51-02-03 하수처리오니

51-02-04 하수준설토

51-02-05 건설오니

51-02-06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석재·골재 생산 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로 한정한다)

51-02-07 유리식각공정오니

- 51-02-08 실리콘공정오니
- 51-02-09 보크사이트잔재물
-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 51-0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 51-03-02 폐합성고무류
 -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 51-03-05 양식용폐부자
 -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 51-03-08 폐어망
 -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 51-04 광채류
 - 51-04-01 고로슬래그
 - 51-04-02 제강슬래그
 - 51-04-03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 51-04-04 선광공정광재
 - 51-04-99 그 밖의 광채류
- 51-05 분진류(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
 - 51-05-01 제철공정분진
 - 51-05-02 시멘트제조공정분진
 - 51-05-03 발전시설분진
 - 51-05-04 폐실리카 폼(규소철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 51-05-99 그 밖의 분진
- 51-06 폐주물사 및 폐사
 -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 51-06-02 화학점결폐주물사
 -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 51-06-04 폐여과사
 - 51-06-99 그 밖의 폐사

- 51-07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 51-07-01 폐내화물
 - 51-07-02 폐도자기조각
- 51-08 소각재
 - 51-08-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 51-08-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 51-08-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 51-09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 51-09-01 안정화 처리물
 - 51-09-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 51-09-03 고화 처리물
 - 51-09-04 킬레이트(Chelate) 처리물
 - 51-09-99 그 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 51-10 폐촉매
 - 51-10-01 금속성폐촉매
 - 51-10-02 페이온교환수지
 - 51-10-03 폐멤브레인수지
 - 51-10-99 그 밖의 폐촉매
- 51-11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51-11-01 폐흡착제
 - 51-11-02 폐흡수제
 - 51-11-03 폐활성탄
- 51-12 폐석고 및 폐석회
 - 51-12-01 폐석고
 - 51-12-02 폐석회
- 51-13 연소잔재물
 - 51-13-01 연탄재
 - 51-13-02 액체연료연소재
 - 51-13-03 석탄재
 -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4 폐석재류

51-14-01 폐석분토사(석재·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응집 미립분을 포함한다)

51-14-02 폐석재

51-15 폐타이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15-01 자동차 폐타이어

51-15-02 그 밖의 폐타이어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51-17 동·식물성잔재물(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51-17-01 동물사체

51-17-02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한다)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51-17-04 폐패각

51-17-05 폐모피류

51-17-06 피혁가공잔재물

51-17-07 동물털

51-17-08 동물성유지류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51-17-21 주정박

51-17-22 맥주박

51-17-23 유박유잔재물

51-17-24 초분류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51-18 폐전기전자제품류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3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19-00 왕겨 및 쌀겨

- 51-20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 51-20-01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 51-20-0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피, 톱밥, 대패밥 등을 말한다)
- 51-20-03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 51-20-04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 51-20-05 목재가공공장 부산물(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 51-20-09 산업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 51-20-10 건축현장 폐목재(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 51-20-11 건축현장 폐목재(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 51-20-12 건축현장 폐목재(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 51-20-13 폐받침목
-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 51-21 폐토사류
- 51-21-01 폐토사
- 51-21-02 건설폐토석
- 51-21-03 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
- 51-22 폐콘크리트류
- 51-22-01 폐콘크리트
- 51-22-02 콘크리트폐받침목
-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51-24-00 폐벽돌

- 51-25-00 페블록
- 51-26-00 폐기와
- 51-27 폐섬유류
 - 51-27-01 폐천연섬유
 - 51-27-02 폐합성섬유
 - 51-27-03 폐의류
 - 51-27-99 그 밖의 폐섬유
- 51-28 폐지류
 -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51-28-02 폐종이류
 - 51-28-03 폐벽지
- 51-29 폐금속류
 - 51-29-01 고철
 - 51-29-02 비철금속
 -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51-29-04 폐금속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 51-30 폐유리류
 - 51-30-01 폐유리
 -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51-30-03 페스마트유리
 - 51-30-04 폐유리섬유
 - 51-30-05 폐형광등파쇄잔재물
 - 51-30-99 그 밖의 폐유리
- 51-31-00 페타일
- 51-32-00 폐보드류
- 51-33-00 폐판넬
- 51-35-00 폐전주(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 51-36 폐가스포집물

- 51-36-01 이산화탄소스트림
- 51-36-02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 51-37 폐냉매물질
 - 51-37-01 가전제품회수폐냉매물질
 - 51-37-02 자동차회수폐냉매물질
 -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 51-37-99 그 밖의 폐냉매물질
- 51-38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 51-38-01 음식물류폐기물
 - 51-38-02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 51-38-0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액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 51-38-99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
- 51-39-00 폐사료
- 51-40 폐소화기류
 - 51-40-01 폐분말소화기
 -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 51-41 폐전지류
 - 51-41-01 1차폐전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51-41-02 2차폐전지
 -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는 제외한다)
 - 51-41-04 폐태양전지·전자기기폐이스트
- 51-42-00 폐의약품류
- 51-43-00 폐흑연가루
- 51-44-00 나노폐기물(나노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 51-45 폐차발생폐기물
 - 51-45-01 폐차파쇄잔재물
 - 51-45-02 폐차부품류
 - 51-45-99 그 밖의 폐차발생폐기물
- 51-46-00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
- 51-99-00 그 밖의 폐기물

3.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합성수지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 91-02-00 음식물류 폐기물(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 91-03-00 폐식용유(가정 및 음식점에서 분리배출된 것을 말한다)
- 91-04-00 폐지류(종이팩을 포함한다)
- 91-05-00 고철 및 금속캔류
- 91-06-01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은 제외한다)
- 91-06-02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
- 91-06-03 폐합성고무류
- 91-07-01 유리병
- 91-07-02 폐유리
- 91-08-00 폐의류 및 원단류
- 91-09-00 폐전기전자제품
- 91-10 폐목재 및 폐가구류
 - 91-10-01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 91-10-02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는 제외한다)
 - 91-10-03 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
- 91-11-00 건설폐재류(콘크리트, 벽돌 등을 말한다)
- 91-12-00 폐타일 및 도자기류
- 91-13-00 폐형광등
- 91-14-00 폐전지류
- 91-15-00 연탄재
- 91-16-00 동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수산가공물, 유지 등을 포함한다)
- 91-17-00 식물성 잔재물
- 91-18-01 영농폐기물(농약용기류)
- 91-18-02 영농폐기물(농촌폐비닐)
- 91-19-00 폐소화기류
-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

부록 2 폐기물 분류항목명 및 내용설명

【지정폐기물】

0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인공적인 화학 합성으로 만들어진 고분자화합물로 고체상태 외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을 포함한다.

01-01-01 폐폴리에틸렌

에틸렌을 중합하여 만드는 열가소성 수지로 내약품성·전기 절연성·방습성·내한성·가공성이 뛰어나며, 절연 재료·그릇·잡화·공업용 섬유·도료 등 생산·가공·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01-01-02 폐폴리프로필렌

프로필렌을 중합하여 얻는 열가소성 수지로 파이프·전선 피복·합성 섬유 등 생산·가공·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01-01-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

염화비닐의 단독 중합 또는 염화비닐을 50 % 이상 함유한 혼성 중합으로 얻어지는 고분자화합물로 경질 파이프·판자·성형품·합성 섬유 등 생산·가공·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01-01-04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테레프탈산과 에틸렌글리콜을 축합 중합하여 얻을 수 있는 포화 폴리에스터 화합물(흔히 PET라고도 한다)로 전선 피복·생활 용품·장난감·전기절연체·라디오와 텔레비전 케이스·포장재 등 생산·가공·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01-01-05 폐페놀수지

페놀류와 알데히드를 축합 중합하여 만든 수지로 성형품·전기 부품·접착제 등 생산·가공·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01-01-06 폐폴리우레탄

우레탄 결합(-NH·CO·O-)을 주요 구성 요소로 가지는 사슬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로 탄성 섬유·도료·접착제·합성 피혁 등의 원료이며, 생산·가공·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01-01-07 폐합성고무

천연고무와 같은 높은 탄성과 강인성을 가진 합성고분자화합물로 폴리아이소프렌 고무, 폴리부타디엔 고무, 폴리클로로프렌 고무 등 생산·가공·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01-01-08 폐폴리스티렌

에틸렌과 벤젠을 반응시켜 생긴 액체 스티렌 단위체의 중합체를 말하며, 스티렌 수지, 합성고무 등 생산·가공·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01-01-09 폐아크리로나이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수지)

아크리로나이트릴(A), 부타디엔(B), 스티렌(S)의 세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수지로 전기제품,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잡화 등 생산·가공·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01-01-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중 세분화된 분류(01-01-01~09)에 해당하지 않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말한다.

01-02 오니류

오니류는 수분함량이 95 %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 % 이상인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오니류에 함유된 유해물질】

번호	유해물질	농도
1	납 또는 그 화합물	3 mg/L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 mg/L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5 mg/L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005 mg/L
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3 mg/L
6	6가크롬화합물	1.5 mg/L
7	시안화합물	1.0 mg/L
8	유기인화합물	1.0 mg/L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1 mg/L
10	트리클로로에틸렌	0.3 mg/L
11	기름성분	5 %
1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 자료출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016)

01-02-01 폐수처리오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동법 제2조제12호)에서 처리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오니를 말한다.

01-02-02 유리식각공정오니

유리제품 제조·가공공정 등에서 불산·염산·질산·황산·인산 등을 이용하여 유리를 식각(etching ; 화학약품의 부식작용을 응용하여 필요한 부위만 방식(防蝕) 처리를 한 후 부식시키거나 표면 가공하는 방법)하는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말한다.

01-02-03 제지공정오니

나무, 고지 및 기타 섬유물질로 펄프를 제조하거나 펄프로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종이를 재가공하여 가공지, 종이용기와 기타 펄프, 종이 및 판지의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말한다.

01-02-04 실리콘제조공정오니

반도체 산업 등에서 실리콘 잉곳의 절단·연마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말한다.

01-02-05 보크사이트잔재물

알루미늄 제련공정에서 원료인 보크사이트를 가성소다(NaOH)로 용해하여 수산화알루미늄($Al(OH)_3$)을 추출하는 공정(bayer)에서 발생하는 불용잔재물로 산화철, 규산 등을 다량 함유하며 적갈색을 띄어 적토(red mud)라고도 하며, 습식 화학제련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오니류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공정오니로, 사업장의 제조·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말한다. 다만, 폐수처리오니, 유리식각공정오니, 제지공정오니, 실리콘제조공정오니, 보크사이트잔재물은 제외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01-03 폐농약

「농작물(수목,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를 폐기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동·식물 및 약제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 : 달팽이·조류 또는 야생동물 2. 식물 : 이끼류 또는 잡목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피제 2. 유인제 3. 전착제

01-03-01 유기인계폐농약

인(P)을 중심으로 각종 원자 또는 원자단으로 구성되며, 인산, 포스폰산, 포스핀산의 에스테르 및 아미드 등으로 구성된 폐농약을 말한다.

01-03-02 유기염소계폐농약

농약의 화학구조에 염소(Cl)를 가지고 있는 폐농약을 말한다.

01-03-03 카바메이트계(Carbamate)폐농약

카밤산($H_2NCOO-R$) 등의 구조를 갖는 폐농약을 말한다.

01-03-99 그 밖의 폐농약

폐농약 중 세분화된 분류 외의 그 밖의 폐농약을 말한다.

02 부식성폐기물

02-01 폐산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2-01-01 폐염산

염산(HCl)의 화학식을 갖는 무색의 염화수소 수용액으로 원료 또는 공정 중 사용되고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LCD 또는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은 제외한다.

02-01-02 폐황산

황산(H₂SO₄)의 화학식을 갖는 무색무취의 불휘발성 액체가 원료 또는 공정 중 사용되고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를 함유한 폐기물도 포함된다. 다만, LCD 또는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은 제외하며, 황산을 포함한 2차폐축전지는 폐산 중 별도의 세부코드로 신설 예정)

02-01-03 폐질산

질산(HNO₃)의 화학식을 갖는 무색의 액체가 원료 또는 공정 중 사용되고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LCD 또는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은 제외한다.

02-01-04 폐불산

불산(HF)의 화학식을 갖는 불화수소 수용액으로 원료 또는 공정 중 사용되고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LCD 또는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은 제외한다.

02-01-05 LCD·반도체공정폐산

LCD 또는 반도체 생산공정 중에 사용된 산(인산, 초산 등)이 액체상태의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02-01-99 그 밖의 폐산

폐산 중 세분화된 분류 외의 산을 말한다.

02-02 폐알칼리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폐수산화나트륨(고상), 폐수산화칼륨(고상)을 포함한다.

02-02-01 폐가성소다수

수산화나트륨(NaOH)의 화학식을 갖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으로 원료 또는 공정 중 사용되고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02-02-02 폐암모니아수

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무색의 액체로 원료 또는 공정 중 사용되고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NaOH의 화학식을 갖는 고상의 물질로서 원료 또는 공정 중 사용되고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KOH의 화학식을 갖는 고상의 물질로서 원료 또는 공정 중 사용되고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폐알칼리 중 세분화된 분류 외의 알칼리를 말한다.

0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시행규칙 별표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1 광재(鑛滓)

광석을 제련한 후 남은 찌꺼기를 말하며, 다음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高爐)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광재에 함유된 유해물질】

번호	유해물질	농도
1	납 또는 그 화합물	3 mg/L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 mg/L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5 mg/L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005 mg/L
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3 mg/L
6	6가크롬화합물	1.5 mg/L
7	시안화합물	1.0 mg/L
8	기름성분	5 %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 자료출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016)

03-01-01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알루미늄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광재를 말한다.

03-01-02 납 열처리·야금(冶金)공정광재

납을 열처리하거나 광석에서 납을 골라내는 일이나 정제·합금·특수 처리하여 금속 재료를 만드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광재를 말한다.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아연을 열처리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광재를 말한다.

03-01-04 철제조공정광재

철을 열처리하거나 정제·합금·특수 처리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광재를 말한다. 다만, 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는 제외한다.

03-01-99 그 밖의 광재

광재 중 세분화된 분류 외의 광재가 폐기물로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03-02-00 분진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분진에 함유된 유해물질】

번호	유해물질	농도
1	납 또는 그 화합물	3 mg/L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 mg/L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5 mg/L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005 mg/L
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3 mg/L
6	6가크롬화합물	1.5 mg/L
7	시안화합물	1.0 mg/L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 자료출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016)

03-03 폐주물사 및 폐사

폐주물사는 주형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 모래로 점토점결폐주물사와 화학점결 폐주물사로 구분되며, 폐사는 폐기되는 모래 및 샌드블라스트폐사로 구분된다. 다만, 다음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폐주물사 및 폐사에 함유된 유해물질】

번호	유해물질	농도
1	납 또는 그 화합물	3 mg/L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 mg/L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5 mg/L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005 mg/L
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3 mg/L
6	6가크롬화합물	1.5 mg/L
7	시안화합물	1.0 mg/L
8	기름성분	5 %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 자료출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016)

03-03-01 점토점결폐주물사

점결제로 점토(벤토나이트, 석분)성분을 사용하여 주형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 모래를 말한다.

03-03-02 화학점결폐주물사

점결제로 화학수지(규산소다, 경화제, 페놀수지 등)를 사용하여 주형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 모래를 말한다.

03-03-03 샌드블라스트페사

모래 분사기로 모래를 뽑어 주물이나 강재의 표면에 붙은 이물질이나 스케일 등을 제거하는 작업에 사용된 모래를 말한다.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폐주물사 및 폐사 중 세분화된 분류 외의 것을 말한다.

03-04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높은 온도에서 견디는 비금속 재료인 요업제품, 내화벽돌, 금속 용해용 도가니 등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에 함유된 유해물질】

번호	유해물질	농도
1	납 또는 그 화합물	3 mg/L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 mg/L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5 mg/L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005 mg/L
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3 mg/L
6	6가크롬화합물	1.5 mg/L
7	시안화합물	1.0 mg/L
8	기름성분	5 %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 자료출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016)

03-04-01 폐내화물

높은 온도에서 견디는 비금속 재료인 요업제품, 내화벽돌, 금속 용해용 도가니 등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폐도자기 조각은 제외한다.

03-04-02 폐도자기조각

도기, 자기, 사기, 질그릇 등을 만들기 위하여 점토에 장석, 석영 등의 가루를 섞어 성형, 건조, 소성하는 공정 중 재별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03-05 소각재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이 연소된 뒤 소각로 바닥과 집진장치 등에서 배출되는 재를 말하며, 폐기물 고형연료(SRF)가 연소 후 발생하는 재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소각재에 함유된 유해물질】

번호	유해물질	농도
1	납 또는 그 화합물	3 mg/L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 mg/L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5 mg/L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005 mg/L
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3 mg/L
6	6가크롬화합물	1.5 mg/L
7	시안화합물	1.0 mg/L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 자료출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016)

03-05-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를 말하며, 방지시설에서 포집되거나 방지시설의 유입관로 등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외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를 말하며, 방지시설에서 포집되거나 방지시설의 유입관로 등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03-05-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를 말한다.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외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를 말한다.

03-05-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말한다.

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외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말한다.

03-06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유동성이 있는 물질을 하소(Calcination), 건조, 시멘트화, 아스팔트화, 유리화 등의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안정한 고체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폐필터 등의 고체 물질을 시멘트 등으로 고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번호	유해물질	농도
1	납 또는 그 화합물	3 mg/L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 mg/L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5 mg/L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005 mg/L
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3 mg/L
6	6가크롬화합물	1.5 mg/L
7	시안화합물	1.0 mg/L
8	기름성분	5 %
9	석면 ¹⁾	1 %
1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1) 고형화 처리물의 경우로서 건조 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경우로 한정한다.

※ 자료출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016)

03-06-01 안정화처리물

폐기물 중 유해물질의 안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처리한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시멘트고형화처리물, 고화처리물, 킬레이트처리물, 폐석면고형화처리물은 제외한다.

03-06-02 시멘트고형화처리물

폐기물 중 유해물질의 누출·유출, 용출을 막기 위하여 시멘트 등으로 물리적으로 안정한 고체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03-06-03 고화처리물

유기성오니를 고화제와 혼합하여 고화처리한 생성물을 말한다.

03-06-04 킬레이트(Chelate)처리물

두 자리 이상의 리간드가 중심 금속 원자와 배위 결합 하여 고리 모양을 이룬 착화합물로 안정화 처리한 폐기물을 말한다.

03-06-05 폐석면고형화처리물

폐석면을 고형화 처리한 폐기물을 말한다.

03-06-99 그 밖의 고형화·고화처리물

세분화된 분류 외의 방법으로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유해물질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고형화·고화 처리한 폐기물을 말한다.

03-07 폐촉매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을 매개하여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늦추는 용도의 물질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폐촉매에 함유된 유해물질】

번호	유해물질	농도
1	납 또는 그 화합물	3 mg/L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 mg/L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5 mg/L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005 mg/L
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3 mg/L
6	6가크롬화합물	1.5 mg/L
7	시안화합물	1.0 mg/L
8	기름성분	5 %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 자료출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016)

03-07-01 금속성폐촉매

금속원소인 철, 백금, 니켈, 은 등을 촉매로 사용하고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금속원소 외의 물질을 촉매로 사용하고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03-0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액체나 기체의 탈색·탈취·탈습·화학분석·물질의 회수·정제·분리·농축 등을 위해 흡착 또는 흡수 목적으로 쓰인 물질로, 광물유·동물유 및 식물유(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는 과정, 식용유를 유통·사용하는 과정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에 함유된 유해물질】

번호	유해물질	농도
1	납 또는 그 화합물	3 mg/L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 mg/L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5 mg/L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005 mg/L
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3 mg/L
6	6가크롬화합물	1.5 mg/L
7	시안화합물	1.0 mg/L
8	유기인화합물	1.0 mg/L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1 mg/L
10	트리클로로에틸렌	0.3 mg/L
11	기름성분	5 %
1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 자료출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016)

03-08-01 흡착제

액체나 기체의 탈색·탈취·탈습·화학분석·물질의 회수·정제·분리·농축 등을 위해 다른 물질을 흡착하고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03-08-02 흡수제

어떤 물질 속의 기체나 액체를 흡수하는 데 쓰인 물질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03-09-00 폐형광등 파쇄잔재물

폐기된 폐형광등을 회수·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리, 플라스틱, 금속, 형광분말 등의 잔재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폐형광등 파쇄잔재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번호	유해물질	농도
1	납 또는 그 화합물	3 mg/L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 mg/L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5 mg/L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005 mg/L
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3 mg/L
6	6가크롬화합물	1.5 mg/L
7	시안화합물	1.0 mg/L
8	기름성분	5 %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 자료출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016)

04 폐유기용제

시너·솔벤트 등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액체상태의 유기화학물질로 휘발성이 크며, 공기 중에 유해가스의 형태로 존재하기 쉬운 물질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04-01-0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폐유기용제 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

번호	유해물질
1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2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3	테트라클로로메탄(Tetrachloromethane)
4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Dichlorodifluoromethane)
5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Trichlorofluoromethane)
6	디클로로에탄(Dichloroethane)
7	트리클로로에탄(Trichloroethane)
8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Trichlorotrifluoroethane)
9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10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11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2	디클로로벤젠(Dichlorobenzene)
13	모노클로로페놀(Monochlorophenol)
14	디클로로페놀(Dichlorophenol)
15	1,1-디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16	1,3-디클로로프로펜(1,3-Dichloropropene)
17	1,1,2-트리클로로-1,2,2-트리플루오로에탄(1,1,2-Trichloro-1,2,2-trifluoroethane)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질을 중량비를 기준으로 하여 5퍼센트 이상 함유한 물질

※ 자료출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016)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폐유기용제(04-01-00)를 제외한 폐유기용제를 말한다.

05 폐페인트 및 페락카

페인트 및 래커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페인트 및 락카 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을 말한다.

또한, 페인트 보관용기에 남아 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을 포함하며, 폐페인트 용기를 포함하되 용기 안에 남아 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 바닥에서 6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05-01-00 폐유성페인트

지방유를 전색제로 하여 여기에 안료를 첨가하여 만든 착색 도료가 폐기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05-02-00 폐수성페인트

아라비아고무, 카세인, 아교 따위의 수용액에 안료를 풀어서 만든 페인트로 물을 더하여 쓰는 페인트가 폐기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05-03-00 페락카

페인트를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된 것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06 폐유

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함유 폐기물, 폐식용유와 그 잔재물,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한다.

06-01 폐광물유

석유와 같은 광물성 기름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06-01-01 폐유허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유허유가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유허유의 종류】

번호	구분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흡입·압축·폭발·배기의 4행정을 크랭크축 1행정으로 수행하는 엔진이 장착된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4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5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외항선박은 제외한다)
6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원양어선은 제외한다)

※ 자료출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016)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폐절삭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금속 등을 자르거나 가는 공정 등 금속가공과정에서 사용된 기름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기계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마찰열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용된 기름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휘발유·경유 등이 연소하여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기름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06-01-05 폐오일필터

오일 속의 불순물을 거르는 역할을 한 필터가 폐기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06-01-06 기름함유 폐전선·폐케이블

절연을 목적으로 기름을 함유한 전선 또는 케이블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06-01-07 폐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을 제외한다)

전기 기계의 절연을 목적으로 쓰인 기름으로 유입 변압기를 포함한다. 다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은 제외한다.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

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2-00 폐동물유

동물·식물로부터 기름을 추출하여 사용되는 기름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폐식용유와 그 잔재물은 제외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폐유 중 세분화된 분류 외의 폐유를 말한다.

07 폐석면

07-01 제품·설비(뿔칠로 사용된 것을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하는 폐석면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
 (뿔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07-01-01 흘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

슬레이트 등 고형화되어 있어 흘날릴 우려가 없는 것을 말한다.

07-01-02 흘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

분진, 부스러기 등 흘날릴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07-02-00 석면제품 등의 연마·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
 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
 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을 말한다.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집진필터 등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뿔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
 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을 말한다.

0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기름성분으로 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2-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

유기용제로 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3-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의 것

액체상태 것으로 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한 액상이 아닌 것

액체상태 외의 것으로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9 폐유독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폐농약(01-03), 부식성폐기물(02), 폐유기용제(04) 및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08)은 제외한다.

09-01-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의 금지물질】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06-4-1	니트로펜[Nitrofen; 1836-75-5]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2	다이알리포스[Dialifos; 10311-84-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3	디디티[DDT; 50-29-3]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4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60-51-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5	디설포톤[Disulfoton; 298-04-4] 및 이를 5%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6	디엘드린[Dieldrin; 60-57-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7	렙토포스[Leptophos; 21609-90-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8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6923-22-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9	메타아미도포스[Methamidophos; 10265-92-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10	비산 납[Lead arsenate; 7784-40-9]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11	비스(2-클로로에틸)에테르[Bis(2-chloroethyl)ether; 111-44-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12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Bis(chloromethyl)ether; 542-88-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13	벤지딘[Benzidine; 92-87-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14	스트리시닌[Strychnine; 57-24-9]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15	아세트산 탈륨[Thallium acetate; 563-68-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16	아세트산 페닐수은[Phenylmercury acetate; 62-38-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17	아크린아트린[Acrinathrin; 101007-06-1]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18	안투[Antu; 86-88-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19	알드린[Aldrin; 309-00-2]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20	알디캡[Aldicarb; 116-06-3]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21	옥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Octabromodiphenyl oxide; 32536-52-0]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22	이소벤잔[Isobenzan; 297-78-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23	인화 알루미늄[Aluminium phosphide; 20859-73-8] 및 그의 분해촉진제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24	엔도설판[Endosulfan; 115-29-7]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25	엔드린[Endrin; 72-20-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26	질산 탈륨[Thallium nitrate; 10102-45-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28	캄페클로르[Camphechlor; 8001-35-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29	클로로벤질레이트[Chlorobenzilate; 510-15-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06-4-30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76-06-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31	클로르단[Chlordan; 57-74-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32	클로르디메폼[Chlordimeform; 6164-98-3]과 그 염류 및 그 중 클로르디메폼으로서 3%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33	캡타폴[Captafol; 2425-06-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34	캡탄[Captan; 133-06-2]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35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포스페이트[Tris(2,3-dibromopropyl)phosphate; 126-72-7]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36	트리플루라린[Trifluralin; 1582-09-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37	파라콰트 염류[Paraquat, salts]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38	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 298-00-0]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39	파라티온[Parathion; 56-38-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40	포스파미돈[Phosphamidon; 13171-21-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41	플루아지남[Fluazinam; 79622-59-6]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42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Fluoroacetamide; 640-19-7]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43	피라클로포스[Pyraclufos; 89784-60-1]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44	피리미닐[Pyriminil; 53558-25-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45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47	페닐수은 트리에탄올 암모늄 붕산[Phenylmercuric triethanol ammonium borate]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48	펜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Pentabromodiphenyl oxide; 32534-81-9]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49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과 그 염류 및 그 중 펜타클로로페놀로서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50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134098-61-6]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51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 608-73-1] 및 이를 1.5%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52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6%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53	황산 탈륨[Thallium sulfate; 7446-18-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54	2-나프틸아민[2-Naphthylamine; 91-59-8]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55	1,2-디브로모에탄[1,2-Dibromoethane; 106-93-4] 및 이를 50%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56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chloropropane; 96-12-8]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57	4-아미노비페닐[4-Aminobiphenyl; 92-67-1]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58	2,4,5-티[2,4,5-T; 93-76-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6-4-59	오산화 비소[Arsenic pentoxide; 1303-28-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자료출처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4 (2016)	

09-02-00 연구·검사용폐시약

연구 또는 시험·검사과정에서 화학적 방법에 의한 물질의 검출이나 정량을 위한 반응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이 오염 또는 유통기간의 초과로 등으로 인하여 폐기되는 시약 등을 말한다.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 중 제2조5호의 금지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을 말한다.

10. 의료폐기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한,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10-11-00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한다.

10-12 위해의료폐기물

10-12-01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등을 말한다. 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2-02 병리계폐기물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을 말한다.

10-12-03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를 말한다.

10-12-04 생물·화학폐기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를 말한다.

10-12-05 혈액오염폐기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한다.

10-12-06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를 말한다.

30-00-0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51-01 유기성오니류

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유기물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또한, 다음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오니류에 함유된 유해물질】

번호	유해물질	농도
1	납 또는 그 화합물	3 mg/L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 mg/L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5 mg/L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005 mg/L
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3 mg/L
6	6가크롬화합물	1.5 mg/L
7	시안화합물	1.0 mg/L
8	유기인화합물	1.0 mg/L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1 mg/L
10	트리클로로에틸렌	0.3 mg/L
11	기름성분	5 %
1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 자료출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016)

51-01-01 정수처리오니

자연상태의 물을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하거나 이들을 결합한 정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말한다.

51-01-02 하수처리오니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오수)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 등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말한다.

51-01-03 분뇨처리오니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말한다.

51-01-04 가축분뇨처리오니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으로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말한다.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분뇨는 제외한다.

51-01-05 펄프·제지공정오니

나무, 폐지 및 기타 섬유물질로 펄프를 제조하거나 펄프로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종이를 재가공하여 가공지, 종이용기와 기타 펄프, 종이 및 판지의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말한다.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

오니류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제품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로서 펄프·제지공정오니는 제외한다.

51-01-07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나무, 폐지 및 기타 섬유물질로 펄프를 제조하거나 펄프로 종이 및 판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종이를 재가공하여 가공지, 종이용기와 기타 펄프, 종이 및 판지의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오니를 말한다.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2조제12호)에서 처리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오니로서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

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

유기성오니류 중 세분화된 분류 외의 오니를 말한다.

51-02 무기성오니류

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유기물 함량이 40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또한, 다음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오니류에 함유된 유해물질】

번호	유해물질	농도
1	납 또는 그 화합물	3 mg/L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 mg/L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5 mg/L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005 mg/L
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3 mg/L
6	6가크롬화합물	1.5 mg/L
7	시안화합물	1.0 mg/L
8	유기인화합물	1.0 mg/L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1 mg/L
10	트리클로로에틸렌	0.3 mg/L
11	기름성분	5 %
1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 자료출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016)

51-02-01 폐수처리오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수질오염 방지시설(같은 법 제2조제12호)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말한다.

51-02-02 정수처리오니

자연상태의 물을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하거나 이들을 결합한 정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말한다.

51-02-03 하수처리오니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오수)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 등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말한다.

51-02-04 하수준설토

합류식 하수관거, 우수관거, 오수관거 등 하수관거의 유지·관리하기 위해 준설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
하수관로, 오수관로 등의 준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토사가 혼합되거나 오염된 상태의 토사는 하수준설토(51-02-04)로 분류

51-02-05 건설오니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 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의 세륜(洗輪)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51-02-06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석재·골재 생산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에 한한다)

건축이나 토목 등에 쓰이는 돌 또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만드는데 쓰는 석재, 자갈, 모래 등을 가공·세척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면서 발생된 오니를 말한다.

51-02-07 유리식각공정오니

유리제품 제조·가공과정 등에서 불산·염산·질산·황산·인산 등을 이용하여 유리를 식각(etching ; 화학약품의 부식작용을 응용하여 필요한 부위만 방식(防蝕) 처리한 후 부식시키거나 표면을 가공하는 방법)하는 공정 중 발생하는 오니를 말한다.

51-02-08 실리콘공정오니

반도체 산업에서 실리콘 잉곳의 절단·연마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말한다.

51-02-09 보크사이트잔재물

알루미늄 제련공정에서 원료인 보크사이트를 가성소다(NaOH)로 용해하여 수산화알루미늄[Al(OH)₃]을 추출하는 공정(bayer)에서 발생하는 불용잔재물로 산화철, 규산 등을 다량 함유하며 적갈색을 띠어 적토(red mud)라고도 하며, 열적제련이 아닌 습식 화학제련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오니류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제품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로서 유리 식각공정오니, 실리콘공정오니, 보크사이트잔재물을 제외한다.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무기성오니류 중 세분화된 분류 외의 오니를 말한다.

51-0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인공적인 화학물질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고분자화합물로 고체상태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을 말한다.

51-03-01 폐합성수지류

유기 화합물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수지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을 말한다. 다만,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사례 1

폐전자스크랩 중 칩 등이 없는 상태의 인쇄회로기판(PCB)은 폐합성수지류(51-03-01)로 분류

사례 2

금속 표면에 페인트 도포나 도금된 상태가 아니라 플라스틱 등 합성수지가 금속에 부착된 상태라면 폐합성수지류(51-03-01)로 분류

51-03-02 폐합성고무류

천연고무와 같은 높은 탄성과 강인성을 가진 합성고분자화합물을 말하며, 폴리 아이소플렌 고무, 폴리부타디엔 고무, 폴리클로로프렌 고무 등이 있다.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염화비닐의 단독 중합 또는 염화비닐을 50 % 이상 함유한 혼성 중합으로 얻어지는 고분자화합물로 경질 파이프·판자·성형품·합성 섬유 등 생산·가공·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다공성 물질로 단열재, 흡음재, 의자나 침대의 쿠션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사례	
□	<p>질의요지 스펀지 제조 시 발생하는 스펀지 불량품, 스펀지 부산물 등을 다시 스펀지로 재생하기 위해 자신의 공장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판매하는 경우 폐기물 해당 여부</p>
○	<p>회신내용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자투리 등이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재활용된다 하여 폐기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적합한 재활용과정을 거쳐 제품으로 생산되어야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처리공정을 거친 후 생산공정에 재투입하거나, 스펀지 재생 등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장에 판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폐기물에 해당되므로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재활용 포함)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처리공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동일 사업장의 동일공정에 원료로 재투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p>

51-03-05 양식용폐부자

발포 스타이렌 수지 등의 원료로 만들어 어류 등 양식용부자로 사용한 후 폐기되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말한다.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유기 화합물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수지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거품을 일으켜 다공성 물질로 만든 합성수지를 말한다.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열이나 압력으로 소성 변형을 시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제품을 포장용으로 사용전·후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1-03-08 폐어망

물고기 등을 잡기 위한 어구(그물)가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중 세분화된 분류 외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말한다.

51-04 광재류

광석을 제련한 후 남은 찌꺼기를 말하며, 다음의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한다.

【광재에 함유된 유해물질】

번호	유해물질	농도
1	납 또는 그 화합물	3 mg/L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 mg/L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5 mg/L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005 mg/L
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3 mg/L
6	6가크롬화합물	1.5 mg/L
7	시안화합물	1.0 mg/L
8	기름성분	5 %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 자료출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016)

51-04-01 고로슬래그

철광 원석을 이용하여 고로에서 선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강 슬래그를 말한다.

51-04-02 제강슬래그

전로 또는 전기로에서 고철 또는 선철을 이용하여 철강·합금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강슬래그를 말한다.

51-04-03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광석을 용광로 등에서 녹여 철 이외의 금속인 금, 은, 구리, 납, 아연, 주석, 수은, 니켈, 텅스텐 등을 정제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광재를 말한다.

51-04-04 선광공정광재

채광과 제련 사이에서 광업의 경영을 가장 유리하도록 광물의 물리적 특성의 차를 이용하여, 주로 물리적 내지 기계적 방법에 의해서 유가 광물과 폐석으로 선별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광재를 말한다.

51-04-99 그 밖의 광재류

광재 중 세분화된 분류 외의 광재를 말한다.

사례
용접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접잔재물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인 경우 그 밖의 광재류(51-04-99)로 분류

51-05 분진류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 또한, 다음의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분진에 함유된 유해물질】

번호	유해물질	농도
1	납 또는 그 화합물	3 mg/L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 mg/L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5 mg/L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005 mg/L
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3 mg/L
6	6가크롬화합물	1.5 mg/L
7	시안화합물	1.0 mg/L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 자료출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016)

51-05-01 제철공정분진

철광석이나 고철 등을 제련하여 철을 뽑아내는 공정 중 발생하는 분진을 말한다.

51-05-02 시멘트제조공정분진

시멘트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말한다.

51-05-03 발전시설분진

화력발전시설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활동 중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말한다.(고형연료를 사용할 경우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발전시설 분진에서 제외하고 소각재로 분류)

51-05-04 폐실리카 폼

규소·철 제조과정에서 이산화규소, 산화철 등을 함유한 미세한 분진(입경 $<1\mu\text{m}$)을 말한다.

51-05-99 그 밖의 분진

분진 중 세분화된 분류 외의 분진을 말한다.

51-06 폐주물사 및 폐사

폐주물사는 주형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 모래로 점토점결폐주물사와 화학점결 폐주물사로 구분되며, 폐사는 폐기되는 모래 및 샌드블라스트폐사로 구분된다. 다음의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폐주물사 및 폐사에 함유된 유해물질】

번호	유해물질	농도
1	납 또는 그 화합물	3 mg/L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 mg/L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5 mg/L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005 mg/L
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3 mg/L
6	6가크롬화합물	1.5 mg/L
7	시안화합물	1.0 mg/L
8	기름성분	5 %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 자료출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016)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점결제로 점토(벤토나이트, 석분)성분을 사용하여 주형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 모래를 말한다.

51-06-02 화학점결폐주물사

점결제로 화학수지(규산소다, 경화제, 페놀수지 등)를 사용하여 주형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 모래를 말한다.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모래 분사기로 모래를 뿜어 주물이나 강재의 표면에 붙은 이물질이나 스케일 등 제거하는 작업에 사용된 모래를 말한다.

51-06-04 폐여과사

수(水)처리과정에서 여과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모래를 말한다.

51-06-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폐여과사 중 세분화된 분류 외의 것을 말한다.

51-07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높은 온도에서 견디는 비금속 재료인 요업제품, 내화벽돌, 금속 용해용 도가니 등이 폐기물로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에 함유된 유해물질】

번호	유해물질	농도
1	납 또는 그 화합물	3 mg/L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 mg/L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5 mg/L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005 mg/L
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3 mg/L
6	6가크롬화합물	1.5 mg/L
7	시안화합물	1.0 mg/L
8	기름성분	5 %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 자료출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016)

51-07-01 폐내화물

높은 온도에서 견디는 비금속 재료인 요업제품, 내화벽돌, 금속 용해용 도가니 등이 폐기물로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폐도자기 조각은 제외한다.

51-07-02 폐도자기조각

도기, 자기, 사기, 질그릇 따위를 만들기 위하여 점토에 장석, 석영 따위의 가루를 섞어 성형, 건조, 소성이나 유통·사용하는 과정 등에서 도자기 조각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1-08 소각재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이 연소된 뒤 소각로 바닥과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재와 고형연료를 연소 후 발생하는 재를 포함하되, 다음의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소각재에 함유된 유해물질】

번호	유해물질	농도
1	납 또는 그 화합물	3 mg/L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 mg/L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5 mg/L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005 mg/L
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3 mg/L
6	6가크롬화합물	1.5 mg/L
7	시안화합물	1.0 mg/L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 자료출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016)

51-08-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를 말하며, 방지시설에서 포집되거나 방지시설의 유입관로 등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외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를 말하며, 방지시설에서 포집되거나 방지시설의 유입관로 등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51-08-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를 말한다.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외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를 말한다.

51-08-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말한다.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외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말한다.

51-09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유동성이 있는 물질을 하소(Calcination), 건조, 시멘트화, 아스팔트화, 유리화 등의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안정한 고체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분체상 등의 고체 물질을 시멘트 등으로 고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음의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번호	유해물질	농도
1	납 또는 그 화합물	3 mg/L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 mg/L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5 mg/L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005 mg/L
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3 mg/L
6	6가크롬화합물	1.5 mg/L
7	시안화합물	1.0 mg/L
8	기름성분	5 %
9	석면	1 %
1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 자료출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016)

51-09-01 안정화 처리물

폐기물 중 유해물질의 반응성 등을 줄여 안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처리한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시멘트고형화처리물, 고화처리물, 킬레이트처리물, 폐석면고형화처리물은 제외한다.

51-09-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폐기물 중 유해물질의 누출·유출, 용출을 막기 위하여 시멘트 등으로 물리적으로 안정한 고체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51-09-03 고화 처리물

유기성오니를 고화제와 혼합하여 고화처리한 생성물을 말한다.

51-09-04 킬레이트(Chelate) 처리물

두 자리 이상의 리간드가 중심 금속 원자와 배위 결합하여 고리 모양을 이룬 착화합물로 안정화 처리한 폐기물을 말한다.

51-09-99 그 밖의 고형화·고화처리물

세분화된 분류 외의 방법으로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유해물질의 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고형화·고화 처리한 폐기물을 말한다.

51-10 폐촉매

자신은 변화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을 매개하여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늦추는 용도의 물질이 폐기물로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폐촉매에 함유된 유해물질】

번호	유해물질	농도
1	납 또는 그 화합물	3 mg/L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 mg/L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5 mg/L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005 mg/L
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3 mg/L
6	6가크롬화합물	1.5 mg/L
7	시안화합물	1.0 mg/L
8	기름성분	5 %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 자료출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016)

51-10-01 금속성폐촉매

금속원소인 철, 백금, 니켈, 은 등을 촉매로 사용하고 폐기물로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51-10-02 폐이온교환수지

이온교환이 될 수 있도록 이온을 가지는 불용성 다공질 폐합성수지를 말한다.

51-10-03 폐멤브레인수지

특정성분을 선택적으로 통과시켜 혼합물을 분리 할 수 있는 막 형태의 폐필터를 말한다.

51-10-99 그 밖의 폐촉매

촉매 중 세분화된 분류 외의 폐촉매를 말한다.

51-11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액체나 기체의 탈색·탈취·탈습·화학분석·물질의 회수·정제·분리·농축을 위해 다른 물질을 흡착 또는 흡수하기 위해 쓰인 물질로 광물유·동물유 및 식물유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를 포함한다. 다만,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는 과정, 식용유를 유통·사용하는 과정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는 제외한다. 다음의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에 함유된 유해물질】

번호	유해물질	농도
1	납 또는 그 화합물	3 mg/L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 mg/L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5 mg/L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005 mg/L
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3 mg/L
6	6가크롬화합물	1.5 mg/L
7	시안화합물	1.0 mg/L
8	유기인화합물	1.0 mg/L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1 mg/L
10	트리클로로에틸렌	0.3 mg/L
11	기름성분	5 %
1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 자료출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016)

51-11-01 폐흡착제

액체나 기체의 탈색·탈취·탈습·화학분석·물질의 회수·정제·분리·농축을 위해 다른 물질을 흡착하는데 사용되는 물질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1-11-02 폐흡수제

어떤 물질 속의 기체나 액체를 흡수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1-11-03 폐활성탄

흡착능력이 강한 탄소질 물질(숯)으로써, 탈취, 가스 정제용, 용제회수 및 오·폐수 등을 처리하는데 쓰이고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51-12 폐석고 및 폐석회

51-12-01 폐석고

황산칼슘의 이수화물($\text{CaSO}_4 \cdot 2\text{H}_2\text{O}$)로 이루어진 석회질 광물이 사용 후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1-12-02 폐석회

석회석을 태워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여 얻는 산화칼슘과 산화칼슘에 물을 부어 얻는 수산화칼슘 등이 사용 후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1-13 연소잔재물

가연성 물질(폐기물과 고형연료는 제외한다)을 태워 발생하는 재 등의 잔재물을 말한다.

51-13-01 연탄재

연탄이 다 타고 남은 재를 말한다.

51-13-02 액체연료연소재

상온, 상압에서 액체 상태인 연료로 석유 및 그 성분 등의 물질을 태워 발생하는 잔재물을 말한다.

51-13-03 석탄재

발전시설의 연소로 안에서 석탄이 연소된 후 남은 재(비산재, 바닥재)를 말한다.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연소잔재물 중 세분화된 분류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51-14 폐석재류

산지 등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1-14-01 폐석분토사(석재·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응집 미립분을 포함하되,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

산지 등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채석·가공하는 과정에서 토사와 섞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1-14-02 폐석재

산지 등의 암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채석·가공하는 과정에서 토사와 섞이지 않은 깨진 석재, 자투리돌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51-15 폐타이어

51-15-01 자동차 폐타이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5호에 해당하는 제품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타이어의 종류】

번호	구분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4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 자료출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5호

51-15-02 그 밖의 폐타이어

타이어 중 세분화된 분류 외의 폐타이어를 말한다.

51-16-00 폐식용유

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사례
소의 뼈로 사골국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원심분리기 등을 통해 분리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폐식용유(51-16-00)로 분류

51-17 동·식물성잔재물

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51-17-01 동물사체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이 죽은 것을 말한다. 다만,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어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동물의 사체는 제외한다.

사례
<p><input type="checkbox"/> 질의요지 반려동물이 아닌 소, 말 등의 가축의 사체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동물의 사체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p> <p><input type="radio"/> 회신내용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됨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적용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p>

51-17-02 축산물가공잔재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포장육·원유·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등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말한다. 다만, 동물성 유지류는 제외한다.

사례
<p><input type="checkbox"/> 질의요지 난가공 전문 업체로부터 세척·분쇄 등 공정을 거친 난각(계란껍질)을 공급받아 칼슘분말을 제조판매 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 여부 등을 환경부에 확인 필요 여부</p> <p><input type="radio"/> 회신내용 식약청 소관 법 상 난각이 칼슘분말 제조 원료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료로 인정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제조·유통되는 등 관리가 되는 경우 폐기물 관련 법령 적용대상에서 제외됨.</p>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말한다.

51-17-04 폐패각

연체동물의 외투막에서 분비된 석회질이 단단하게 굳어서 된 걸껍데기를 말한다.

51-17-05 폐모피류

동물의 가죽으로 의복, 모자 등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털가죽을 말한다.

51-17-06 피혁가공잔재물

동물의 날가죽이나 무두질한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말한다.

51-17-07 동물털

도축 또는 도계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털을 말한다.

51-17-08 동물성유지류

동물의 지방 조직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동물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로 세분화된 분류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51-17-21 주정박

술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다만, 맥주박은 제외한다.

51-17-22 맥주박

맥주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맥주를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51-17-23 유박유잔재물

식물의 씨앗 등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51-17-24 초분류

지상부가 연하고 물기가 많아 목질을 이루지 않는 식물로 보통 1~2년생의 식물이며, 잡초, 잔디 등 제초나 깎는 작업을 통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사례 1

- 질의요지
‘숲가꾸기’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벌목잔재(원목, 가지, 잎)가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숲가꾸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임지잔재를 그대로 산지 내에 적치하거나 산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외부로 반출하여 적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나, 반출 후 적정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버려지거나 운반 중 사용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되거나 당초 계획된 원료로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진 임지잔재와 장마·홍수 등으로 산지에서 쓸려 내려온 임지잔재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됨.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식물로 제품 등으로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로 세분화된 분류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동물의 잔재물과 식물의 잔재물이 제조·가공 등의 과정에서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51-18 폐전기전자제품류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전자제품을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전자제품을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

폐전자스크랩 중 각종 칩이나 메모리 등은 폐전기전자제품류(51-18)로 분류

51-18-03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 폐부속품

사무용 기기 중 컴퓨터의 결과물을 인쇄하는 주변장치에 사용되거나 복사기의 토너 및 카트리지 등이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부분품·부속품을 포함한다)가 폐기되는 것으로 가정용·산업용 폐전기전자제품과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 폐부속품을 제외한다.

51-19-00 왕겨 및 쌀겨

벼 또는 보리, 밀 등 곡류에서 껍질을 벗겨 낸 겉겨 또는 속겨를 말한다.

51-20 폐목재류

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51-20-01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51-20-0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피, 톱밥, 대패밥 등을 말한다.)

51-20-03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4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폐유기용제(04), 폐페인트 및 폐락카(05), 폐유(06) 등 유해물질 함유기준 미만인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에 한한다.

51-20-05 목재가공공장 부산물(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폐유기용제(04), 폐유(06) 등 유해물질 함유기준 미만인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에 한한다.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으로서 폐유기용제(04), 폐유(06) 등 유해물질 함유기준 미만인 폐목재류에 한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으로서 폐유기용제(04), 폐유(06) 등 유해물질 함유기준 미만인 폐목재류에 한한다.

51-20-09 산업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된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사례

- 질의요지
원료 및 자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목재 팔레트를 납품업체에서 수거하여 동일 용도로 반복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해당 여부
- 회신내용
제품이나 원자재의 운반 등을 목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목재 팔레트를 별도의 수리·수선·가공 등의 과정없이 그대로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51-20-10 건축현장 폐목재(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건축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11 건축현장 폐목재(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건축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목재에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후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폐유기용제(04), 폐페인트 및 페락카(05), 폐유(06) 등 유해물질 함유기준 미만인 폐목재에 한한다.

51-20-12 건축현장 폐목재(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건축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목재 중 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후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폐유기용제(04), 폐페인트 및 페락카(05), 폐유(06) 등 유해물질 함유기준 미만인 폐목재에 한한다.

51-20-13 폐받침목

철도레일 등의 받침 목적으로 사용된 후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폐유기용제(04), 폐페인트 및 페락카(05), 폐유(06) 등 유해물질 함유기준 미만인 폐받침목에 한한다.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목재류 중 세분화된 분류 외의 폐목재를 말한다.

51-21 폐토사류

51-21-01 폐토사

자연상태의 토사가 아닌 폐기물 등 다른 물질이 혼합되어 있거나 오염된 흙이나 모래를 말한다.

51-21-02 건설폐토석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51-21-03 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

오염된 호소나 바다, 강의 바닥을 준설할 때 퇴적된 뺨이나 흙, 모래를 말한다.

51-22 폐콘크리트류

51-22-01 폐콘크리트

시멘트, 배합수, 골재 등 혼화재료를 섞어서 만든 혼합물으로써, 건설현장 및 사업장(콘크리트·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체 등) 등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1-22-02 콘크리트폐받침목

콘크리트로 만들어 철도레일 등의 받침 목적으로 사용된 후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를 녹여서 자갈·쇄석 등의 골재를 섞은 것으로 도로포장 등에 쓰인 후 발생되거나 반품, 불량품을 말한다.

51-24-00 폐벽돌

진흙과 모래를 반죽하여 틀에 박아 600~1,100℃에서 소성하여 만들거나, 시멘트와 모래를 버무려 틀에 박아 건조한 건축재료로 건물의 벽체나 담장의 재료로 사용된 벽돌, 시멘트 벽돌, 경량 벽돌, 붉은 벽돌 등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1-25-00 폐블록

인도에 설치된 보도블록 또는 도로에 설치된 경계블록 등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1-26-00 폐기와

지붕이나 담장 등을 이는 데에 쓰기 위하여 흙을 굽거나 시멘트 등을 굳혀서 만든 건축자재로서 제조·유통·사용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51-27 폐섬유류**51-27-01 폐천연섬유**

방직 섬유 가운데 솜, 삼 껍질, 명주실, 털 등의 천연물의 세포로 되어 있는 섬유로 동물성 섬유, 식물성 섬유, 광물성 섬유 등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1-27-02 폐합성섬유

석유, 석탄 등을 원료로 하여 화학적으로 합성한 섬유로 나일론, 비닐론, 폴리에스테르 등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1-27-03 폐의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등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1-27-99 그 밖의 폐섬유

섬유류 중 세분화된 분류 외의 폐섬유를 말한다.

51-28 폐지류**51-28-01 폐종이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

51-28-02 폐종이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나 판지제품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1-28-03 폐벽지

벽이나 천정에 바른 종이나 섬유 또는 도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이나 섬유 등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1-29 폐금속류

51-29-01 고철

낡고 오래된 쇠, 또는 그 조각,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철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1-29-02 비철금속

철 이외의 금속을 말하며, 금, 은, 구리, 납, 아연, 주석, 수은, 니켈, 알루미늄, 텅스텐 등이 포함된다.

51-29-03 폐금속캔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금속캔

51-29-04 폐금속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금속류 중 세분화된 분류 외의 폐금속류가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1-30 폐유리류

51-30-01 폐유리

석영, 탄산소다, 석회암 등을 섞어 높은 온도에서 녹인 다음 냉각하여 만든 물질로 투명하고 단단한 물질(유리)이 폐기물로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포장에 사용되는 폐유리병, 페스마트유리는 제외한다.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유리병

51-30-03 페스마트유리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분야 등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고기능성 첨단유리 제품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1-30-04 폐유리섬유

유리를 길고 가늘게 실이나 섬유형태로 만든 것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1-30-05 폐형광등과쇄잔재물

폐기된 폐형광등을 회수·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리, 플라스틱, 금속, 형광분말 등의 잔재물을 말한다. 다음의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폐형광등 파쇄잔재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번호	유해물질	농도
1	납 또는 그 화합물	3 mg/L
2	구리 또는 그 화합물	3 mg/L
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5 mg/L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0.005 mg/L
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0.3 mg/L
6	6가크롬화합물	1.5 mg/L
7	시안화합물	1.0 mg/L
8	기름성분	5 %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 자료출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016)

51-30-99 그 밖의 폐유리

유리류 중 세분화된 분류 외의 폐유리류를 말한다.

51-31-00 페타일

점토를 구워서 만든 제품으로 겉이 반들반들한 얇고 작은 도자기 판, 벽, 바닥 등에 붙여 사용하는 장식용이 제조·유통·사용하는 과정에서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1-32-00 폐보드류

석고를 주원료로 한 석고보드, 인테리어 내외수장재·마감재(보드형태) 등으로 폐석면이 함유된 것은 제외한다.

51-33-00 폐판넬

건설·공사현장이나 콘크리트제품 제조 등의 과정에서 사용·파손된 것으로 널판지 또는 콘크리트를 붓는 형틀 등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1-35-00 폐전주(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전선이나 통신선을 늘여 매기 위하여 세운 기둥으로 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51-36 폐가스포집물

51-36-01 이산화탄소스트림

지중저장이나 해양 지중저장을 목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시설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로서 이산화탄소(CO₂)로 대부분 구성된 물질을 말한다.

51-36-02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여 안정화한 폐기물을 말한다.

51-37 폐냉매물질

51-37-01 가전제품회수폐냉매물질

냉매로 사용되는 고압가스로 가전제품에서 회수한 것을 말한다.

51-37-02 자동차회수폐냉매물질

냉매로 사용되는 고압가스로 자동차에서 회수한 것을 말한다.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냉매로 사용되는 고압가스로 사업장의 공조기에서 회수한 것을 말한다.

51-37-99 그 밖의 폐냉매물질

냉매물질 중 세분화된 분류 외의 폐냉매물질을 말한다.

51-38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51-38-01 음식물류폐기물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하며, 동·식물성 잔재물은 제외한다. 즉, 처리 이전의 폐기물을 말한다.

51-38-02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최종처리하기 위해 중간처리(가공)한 폐기물을 말한다.

51-38-0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액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가공폐기물과 재활용 제품을 제외한 잔재물을 말한다. 다만, 액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51-38-99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가공폐기물과 재활용 제품을 제외한 잔재물을 말한다. 다만, 액상의 경우(51-38-03)는 제외한다.

51-39-00 폐사료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가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1-40 폐소화기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나 기계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를 포함한다)으로 소화약제가 포함되어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51-40-01 폐분말소화기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수소칼륨, 인산암모늄 등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함유하고 있는 소화기가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분말형태 외의 소화약제를 함유하고 있는 액화 또는 가스식 소화기가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1-41 폐전지류

51-41-01 1차폐전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제품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

- 수은전지
- 산화은전지
- 니켈카드뮴전지
- 리튬전지
-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 니켈수소전지

51-41-02 2차폐전지

화학반응에 따라 전기에너지를 저장하고 내보낼 수 있는 재충전이 가능한 전기화학시스템을 갖는 전지 또는 배터리를 말한다.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제외한다)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다만, 황산을 포함한 축전지는 제외한다.

51-41-04 폐태양전지·전자기기폐이스트

구리, 납, 은, 주석, 백금, 금 등의 금속을 이용하여 전기를 흐르게 하기 위해 도포 작업이 된 제품이 사용 후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51-42-00 폐의약품류

「약사법」 제2조제4항의 의약품을 폐기 또는 사용 후 남은 잔량을 회수한 폐기물을 말한다.

51-43-00 폐흑연가루

그라파이트(흑연) 가공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주성분이 탄소 성분으로 구성된 폐기물을 말한다.

51-44-00 나노폐기물(나노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나노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하며, 10억분의 1 미터 미만의 나노(nano)물질이 함유된 폐기물로 순수 나노물질, 나노물질로 오염된 것, 나노물질이 함유된 액체, 나노물질이 포함된 고형물 등으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 노출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참고로, 국제적으로 나노폐기물의 정의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나노물질이 원료물질로 사용된 제품 등으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 노출 우려가 있는 폐기물도 포함된다.

51-45 폐차발생폐기물

51-45-01 폐차파쇄잔재물

폐자동차를 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로 금속류 및 그 밖의 유용한 것을 회수하고 남은 폐기물을 말한다.

51-45-02 폐차부품류

자동차를 정비하거나 폐자동차를 해체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부분품 및 폐부속품으로서 범퍼·문짝·본넷 등 수리·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51-45-99 그 밖의 폐차발생폐기물

폐차발생폐기물 중 세분화된 분류 외의 것으로서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차피) 등을 말한다. 단, 폐타이어, 폐냉매물질,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유리류, 폐축매, 폐금속류 등 폐차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다른 세분화된 분류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51-46-00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

의료폐기물을 멸균분쇄공정을 거쳐 발생하는 잔재물을 말한다.

51-99-00 그 밖의 폐기물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 중 세분화된 분류 외의 것을 말한다.

사례

□ 질의요지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시추선 시운전 시 발생하는 Mud를 육상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 해당 여부

○ 회신내용

시추선의 시추작업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Mud에는 Bentonite, Barite, Caustic Soda 등과 같은 광물·화학성분과 오염된 퇴적물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폐기물에 해당됨.

선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육상으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폐기물의 배출에 따른 신고,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아울러, 동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며, 폐기물을 수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적합여부 확인을 받아야 함

부록 3

업종별 사업장폐기물 분류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농업 (01)	지정 폐기물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05	폐오일필터	
		06-03-00	그 밖의 폐유	
		07-01-01	훅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	
		07-01-02	훅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집진필터 등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4	가축분뇨처리오니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13-01	연탄재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7-01	동물사체	
		51-17-24	초본류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9-00	왕겨 및 쌀겨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51-27-02	폐합성섬유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39-00	폐사료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임업 (02)	지정 폐기물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3-00	그 밖의 폐유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20-01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어업 (03)	지정 폐기물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5	양식용폐부자	
		51-03-08	폐어망	
		51-17-01	동물사체	
		51-17-04	폐패각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지정 폐기물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4-04	선광공정광재
		51-05-99	그 밖의 분진
		51-14-02	폐석재
		51-20-01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51-20-13	폐받침목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금속광업 (06)	지정 폐기물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99	그 밖의 폐산
		03-01-99	그 밖의 광재
	사업장 일반 폐기물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51-02-01	폐수처리오니
		51-04-04	선광공정광재
		51-04-99	그 밖의 광재류
		51-05-99	그 밖의 분진
		51-14-02	폐석재
		51-20-01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51-20-13	폐받침목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	지정 폐기물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99	그 밖의 폐산
		03-01-99	그 밖의 광재
	사업장 일반 폐기물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51-02-01	폐수처리오니
		51-04-04	선광공정광재
		51-04-99	그 밖의 광재류
		51-05-99	그 밖의 분진
		51-12-02	폐석회
		51-14-02	폐석재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광업 지원 서비스업 (08)	지정 폐기물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식품 제조업 (10)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폐락카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09-02-00	연구·검사용폐시약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유기성)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5-99	그 밖의 분진
51-06-04		폐여과사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10-01	금속성폐촉매		
		51-10-02	페이온교환수지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51-17-02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한다)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51-17-04	폐폐각		
		51-17-07	동물털		
		51-17-08	동물성유지류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19-00	왕겨 및 쌀겨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8-02	폐종이류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9-04	폐금속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51-30-01	폐유리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0-04	폐유리섬유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음료 제조업 (11)	지정 폐기물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3-02-00	분진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7-01	금속성폐촉매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사업장 일반 폐기물	06-01-03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9-02-00	연구·검사용폐시약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51-01-01	51-01-01	정수처리오니(유기성)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유기성)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02	정수처리오니(무기성)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5-99	그 밖의 분진
		51-06-04	폐여과사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10-03	폐멤브레인수지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7-21	주정박
		51-17-22	맥주박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8-02	폐종이류
		51-29-02	비철금속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9-04	폐금속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51-30-01	폐유리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담배 제조업 (12)	지정 폐기물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28-02	폐종이류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3)	지정 폐기물	01-01-01	폐폴리에틸렌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02-00	분진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7-01	금속성폐촉매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4-01-0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사업장 일반 폐기물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유기성)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5-99		그 밖의 분진	
51-06-04	폐여과사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10-02	폐이온교환수지
		51-10-03	폐멤브레인수지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51-13-02	액체연료연소재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7-07	동물털
		51-27-01	폐천연섬유
		51-27-02	폐합성섬유
		51-27-99	그 밖의 폐섬유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의복, 의복에서 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02-00	분진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4-01-0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6-01-01	폐운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린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6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5-99		그 밖의 분진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51-17-05		폐모피류
	51-17-06		피혁가공잔재물
	51-17-07		동물털
	51-17-08		동물성유지류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7-01		폐천연섬유
	51-27-02		폐합성섬유
	51-27-03	폐의류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28-02	폐종이류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4-01-0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유기성)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페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5-99	그 밖의 분진
		51-11-01	폐흡착제
		51-11-03	폐활성탄
		51-17-05	폐모피류
		51-17-06	피혁가공잔재물
		51-17-07	동물털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7-02	폐합성섬유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28-02	폐종이류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의 (16)	지정 폐기물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2-01-01	폐염산		
04-01-0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폐락카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계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유기성)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5-99	그 밖의 분진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51-06-99	그 밖의 폐사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20-0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피, 톱밥, 대패밥 등을 말한다)
		51-20-03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4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5	목재가공공장 부산물(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03	제지공정오니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02-00	분진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4-01-0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5	펄프·제지공정오니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유기성)
		51-01-07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5-99	그 밖의 분진
		51-07-01	폐내화물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51-12-02	폐석회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7-02	폐합성섬유
		51-28-02	폐종이류
51-28-03	폐벽지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3-08-01	폐흡착제
		04-01-0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5-99		그 밖의 분진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3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8-02	폐종이류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02-00	분진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03-07-01	금속성폐축매	
		03-07-02	비금속성폐축매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4-01-0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폐락카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폐절삭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08-02-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	
		08-03-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의 것	
		08-04-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이 아닌 것	
		09-01-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09-02-00	연구·검사용폐시약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유기성)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5-99	그 밖의 분진
		51-06-99	그 밖의 폐사
		51-07-01	폐내화물
		51-10-01	금속성폐촉매
		51-10-02	페이온교환수지
		51-10-03	페멤브레인수지
		51-10-99	그 밖의 폐촉매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51-12-01	폐석고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9-04	폐금속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51-36-01	이산화탄소스트림
		51-36-02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	지정 폐기물	01-01-01	페폴리에틸렌
		01-01-02	페폴리프로필렌
		01-01-03	페폴리염화비닐수지
		01-01-04	페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01-01-05	페페놀수지
		01-01-06	페폴리우레탄
		01-01-07	폐합성고무
		01-01-08	페폴리스틸렌
		01-01-09	페아크로니트릴브타디엔스티렌
		01-01-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2-01	페수처리오니
		01-02-04	실리콘제조공정오니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1-03-01	유기인계폐농약
		01-03-02	유기염소계폐농약
		01-03-03	카바메이트계(Carbamate)폐농약
		01-03-99	그 밖의 폐농약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03-02-00	분진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03-04-01	폐내화물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7-01	금속성폐촉매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폐락카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폐절삭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2-00	폐동식물유	
		06-03-00	그 밖의 폐유	
		09-01-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09-02-00	연구·검사용폐시약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유기성)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10-01	금속성폐촉매
			51-10-02	페이온교환수지
			51-10-03	폐멤브레인수지
			51-10-99	그 밖의 폐촉매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51-12-01	폐석고
			51-12-02	폐석회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29-04	폐금속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51-36-01	이산화탄소스트림		
		51-36-02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02-00	분진		
		03-07-01	금속성폐촉매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4-01-0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6-01-01	폐유탄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폐절삭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2-00	폐동식물유		
		06-03-00	그 밖의 폐유		
		09-02-00	연구·검사용폐시약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10-12-01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2-02	병리계폐기물		
		10-12-03	손상성폐기물		
		10-12-04	생물·화학폐기물		
		10-12-05	혈액오염폐기물		
		10-12-06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5-99	그 밖의 분진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10-01	금속성폐촉매
		51-10-02	폐이온교환수지
		51-10-03	폐멤브레인수지
		51-10-99	그 밖의 폐촉매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8-02	폐종이류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51-30-01	폐유리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42-00	폐의약품류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02-00	분진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폐락카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계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유기성)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5-99	그 밖의 분진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2-01	폐석고
		51-15-01	자동차 페타이어
		51-15-02	그 밖의 페타이어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7-02	폐합성섬유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02	유리식각공정오니
		01-02-05	보크사이트잔재물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02-00	분진
		03-04-01	폐내화물
		03-04-02	폐도자기조각
		04-01-0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사업장 일반 폐기물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2-00	폐동식물유
		06-03-00	그 밖의 폐유
		07-02-00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유기성)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07	유리식각공정오니
		51-02-06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석재·골재 생산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에 한한다)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4-99	그 밖의 광채류
		51-05-99	그 밖의 분진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51-07-01	폐내화물
		51-07-02	폐도자기조각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10-01	금속성폐촉매
		51-10-99	그 밖의 폐촉매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51-12-01	폐석고
		51-12-02	폐석회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4-02	폐석재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2-01	폐콘크리트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51-24-00	폐벽돌
		51-25-00	폐블록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26-00	폐기와
		51-30-01	폐유리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0-99	그 밖의 폐유리
		51-31-00	폐타일
		51-32-00	폐보드류
		51-33-00	폐판넬
		51-36-01	이산화탄소스트림
		51-36-02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1차 금속 제조업 (24)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05	보크사이트잔재물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2-01-01	폐엽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01-01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03-01-02	납 열처리·야금(冶金)공정광재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03-01-04	철제조공정광재(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는 제외한다)
		03-01-99	그 밖의 광재
		03-02-00	분진
		03-03-01	점토점결폐주물사
		03-03-02	화학점결폐주물사
		03-03-03	샌드블라스트폐사
		03-04-01	폐내화물
		03-07-01	금속성폐촉매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4-01-0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폐절삭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사업장 일반 폐기물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유기성)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09	보크사이트잔재물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4-01	고로슬래그
		51-04-02	제강슬래그
		51-04-03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51-04-99	그 밖의 광재류
		51-05-01	제철공정분진
		51-05-04	폐실리카 폼(규소철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51-05-99	그 밖의 분진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51-06-99	그 밖의 폐사
		51-07-01	폐내화물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10-01	금속성폐축매
		51-11-01	폐흡착제
		51-12-01	폐석고
		51-13-03	석탄재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1-01	폐토사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51-30-01	폐유리
		51-36-01	이산화탄소스트림
		51-36-02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01-02	납 열처리·야금(冶金)공정광재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03-01-04	철제조공정광재(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는 제외한다)
		03-01-99	그 밖의 광재
		03-02-00	분진
		03-03-01	점토점결폐주물사
		03-03-02	화학점결폐주물사
		03-03-03	샌드블라스트폐사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03-08-01	폐흡착제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폐락카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페절삭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유기성)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4-99	그 밖의 광재류
		51-05-99	그 밖의 분진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51-06-02	화학점결폐주물사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51-07-01	폐내화물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51-12-01	폐석고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8-02	폐종이류
		51-29-01	고철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29-02	비철금속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9-04	폐금속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51-30-01	폐유리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02	유리식각공정오니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05	LCD·반도체공정폐산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01-99	그 밖의 광재
		03-02-00	분진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4-01-0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폐락카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08-02-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10-12-02	병리계폐기물
		10-12-03	손상성폐기물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유기성)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5-04	폐실리카 폼(규소철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51-05-99	그 밖의 분진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51-06-99	그 밖의 폐사
		51-07-01	폐내화물
		51-07-02	폐도자기조각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10-01	금속성폐촉매
		51-10-02	페이온교환수지
		51-10-03	페멤브레인수지
		51-10-99	그 밖의 폐촉매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51-12-01	폐석고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8-02	폐종이류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30-01	폐유리
		51-30-03	페스마트유리
		51-30-99	그 밖의 폐유리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51-37-99	그 밖의 폐냉매물질
		51-41-01	1차폐전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41-02	2차폐전지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제외한다)
51-41-04	폐태양전지·전자기기페이스트		
51-43-00	폐흑연가루		
51-44-00	나노폐기물(나노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02	유리식각공정오니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4-01-0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페락카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폐절삭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유기성)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07		유리식각공정오니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4-99		그 밖의 광채류	
	51-05-99		그 밖의 분진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11-01		폐흡착제	
	51-11-03		폐활성탄	
	51-15-02		그 밖의 페타이어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30-01	폐유리		
	51-30-03	폐스마트유리		
51-30-99	그 밖의 폐유리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41-01	1차폐전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41-02	2차폐전지
		51-44-00	나노폐기물(나노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전기장비 제조업 (28)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01-02	납 열처리·야금(冶金)공정광재
		03-01-99	그 밖의 광재
		03-02-00	분진
		03-08-01	폐흡착제
		03-09-00	폐형광등 파쇄잔재물
		04-01-0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6	기름함유 폐전선·폐케이블
	06-01-07	폐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을 제외한다)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09-01-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유기성)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07	유리식각공정오니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4-99	그 밖의 광재류
		51-05-99	그 밖의 분진
		51-07-01	폐내화물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10-01	금속성폐촉매
		51-10-99	그 밖의 폐촉매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2-01	폐석고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8-02	폐종이류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51-30-01	폐유리
		51-30-05	폐형광등과쇄잔재물
		51-30-99	그 밖의 폐유리
		51-41-01	1차폐전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41-02	2차폐전지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제외한다)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01-99	그 밖의 광재
		03-02-00	분진
		03-03-01	점토점결폐주물사
		03-03-02	화학점결폐주물사
		03-03-03	샌드블라스트폐사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03-08-01	폐흡착제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페락카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06-01-02	폐연마유 · 비수용성폐절삭유 · 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 · 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 · 냉동기유 · 터빈유 · 베어링윤활유 · 압축기유 · 유압작동유 · 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05	폐오일필터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 · 그리스(grease) · 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2-00	폐동식물유
		06-03-00	그 밖의 폐유
		07-02-00	석면제품 등의 연마 · 절단 · 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 · 절단 · 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4-02	제강슬래그
		51-04-99	그 밖의 광재류
		51-05-99	그 밖의 분진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51-06-02	화학점결폐주물사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51-06-99	그 밖의 폐사
		51-07-01	폐내화물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51-12-01	폐석고
		51-12-02	폐석회
		51-13-02	액체연료연소재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5-02	그 밖의 페타이어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9	산업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20-13	폐반침목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51-27-01	폐천연섬유
		51-27-02	폐합성섬유
		51-28-02	폐종이류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29-04	폐금속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51-30-01	폐유리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51-37-99	그 밖의 폐냉매물질
		51-40-01	폐분말소화기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51-41-02	2차폐전지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제외한다)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01-02	납 열처리·야금(冶金)공정광재
		03-01-99	그 밖의 광재
		03-02-00	분진
		03-03-01	점토점결폐주물사
		03-03-02	화학점결폐주물사
		03-03-03	샌드블라스트폐사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7-01	금속성폐촉매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4-01-0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폐락카
		06-01-01	폐유탄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폐절삭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05	폐오일필터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08-03-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의 것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10-12-03	손상성폐기물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유기성)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4-99	그 밖의 광재류
		51-05-99	그 밖의 분진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51-06-02	화학점결폐주물사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51-07-01	폐내화물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10-01	금속성폐촉매
		51-10-99	그 밖의 폐촉매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51-12-01	폐석고
		51-15-01	자동차 페타이어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9	산업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51-27-02	폐합성섬유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29-01	고철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29-02	비철금속
		51-29-04	폐금속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51-30-01	폐유리
		51-37-02	자동차회수폐냉매물질
		51-37-99	그 밖의 폐냉매물질
		51-41-02	2차폐전지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제외한다)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01-99	그 밖의 광재
		03-02-00	분진
		03-03-01	점토점결폐주물사
		03-03-02	화학점결폐주물사
		03-03-03	샌드블라스트폐사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03-05-02	사업장폐기물 조각시설 비산재
		03-05-04	사업장폐기물 조각시설 바닥재
		03-05-06	사업장폐기물 조각시설 조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7-01	금속성폐축매
		03-07-02	비금속성폐축매
		03-08-01	폐흡착제
		04-01-0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폐락카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폐절삭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05	폐오일필터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유기성)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4-99	그 밖의 광채류
		51-05-99	그 밖의 분진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51-06-02	화학점결폐주물사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51-06-99	그 밖의 폐사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10-01	금속성폐촉매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2-01	폐석고
		51-15-02	그 밖의 페타이어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9	산업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51-20-13	폐받침목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51-27-02	폐합성섬유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51-30-01	폐유리
		51-30-04	폐유리섬유
		51-31-00	페타일
		51-32-00	폐보드류
		51-33-00	폐판넬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51-37-99	그 밖의 폐냉매물질		
51-41-03	2차폐축전기(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기를 제외한다)		
51-44-00	나노폐기물(나노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가구 제조업 (32)	지정 폐기물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99	그 밖의 폐산
		03-02-00	분진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폐락카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폐절삭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유기성)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5-99	그 밖의 분진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11-01	폐흡착제
		51-17-04	폐폐각
		51-20-0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피, 톱밥, 대패밥 등을 말한다)
51-20-03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4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5	목재가공공장 부산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51-27-01	폐천연섬유		
51-27-02	폐합성섬유		
51-27-99	그 밖의 폐섬유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기타 제품 제조업 (33)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02-00	분진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8-01	폐흡착제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폐락카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폐절삭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6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페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4-99		그 밖의 광채류
	51-05-99		그 밖의 분진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51-06-02	화학점결폐주물사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51-06-99	그 밖의 폐사		
51-07-01	폐내화물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07-02	폐도자기조각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10-01	금속성폐촉매
		51-10-99	그 밖의 폐촉매
		51-11-01	폐흡착제
		51-12-01	폐석고
		51-12-02	폐석회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7-05	폐모피류
		51-17-07	동물털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20-0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피, 톱밥, 대패밥 등을 말한다)
		51-20-03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4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5	목재가공공장 부산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51-27-01	폐천연섬유
		51-27-02	폐합성섬유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28-02	폐종이류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30-01	폐유리
		51-30-03	페스마트유리
		51-30-04	폐유리섬유
		51-30-99	그 밖의 폐유리
51-41-01	1차폐전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41-02	2차폐전지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02-00	분진
		03-04-01	폐내화물
		03-07-01	금속성폐촉매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03-08-01	폐흡착제
		04-01-0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08-02-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
		08-03-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의 것
		08-04-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이 아닌 것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1	정수처리오니(유기성)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유기성)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02	정수처리오니(무기성)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5-03	발전시설분진
		51-05-99	그 밖의 분진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51-06-99	그 밖의 폐사
		51-07-01	폐내화물
		51-07-02	폐도자기조각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조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10-01	금속성폐촉매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12-01	폐석고
		51-12-02	폐석회
		51-13-03	석탄재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20-01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51-20-0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피, 톱밥, 대패밥 등을 말한다)
		51-20-03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4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5	목재가공공장 부산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9	산업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51-21-01	폐토사
		51-22-01	폐콘크리트
		51-24-00	폐벽돌
		51-25-00	폐블록
		51-27-02	폐합성섬유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51-35-00	폐전주(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51-41-01	1차폐전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41-02	2차폐전지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제외한다)
		51-41-04	폐태양전지·전자기기폐이스트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수도사업 (36)	지정 폐기물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9-02-00	연구·검사용폐시약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1	정수처리오니(유기성)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02	정수처리오니(무기성)	
		51-06-04	폐여과사	
		51-10-02	페이온교환수지	
		51-10-03	페멤브레인수지	
		51-10-99	그 밖의 폐촉매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09-02-00	연구·검사용폐시약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2	하수처리오니(유기성)
	51-01-03		분뇨처리오니	
	51-01-04		가축분뇨처리오니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유기성)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03		하수처리오니(무기성)	
	51-02-04		하수준설토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5-99		그 밖의 분진	
	51-06-04		폐여과사	
	51-07-01		폐내화물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51-21-03	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01-01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03-01-02	납 열처리·야금(冶金)공정광재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03-01-04	철제조공정광재(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는 제외한다)
		03-01-99	그 밖의 광재
		03-02-00	분진
		03-03-01	샌드블라스트폐사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03-04-01	폐내화물
		03-05-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6-01	안정화처리물
		03-06-02	시멘트고형화처리물
		03-06-03	고화처리물
		03-06-04	킬레이트(Chelate)처리물
		03-06-05	폐석면고형화처리물(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03-06-99	그 밖의 고형화·고화처리물
		03-07-01	금속성폐촉매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3-09-00	폐형광등 파쇄잔재물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5	폐오일필터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사업장 일반 폐기물	08-01-00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08-02-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	
		08-03-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의 것	
		08-04-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이 아닌 것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51-01-01	51-01-01	정수처리오니(유기성)	
		51-01-02	하수처리오니(유기성)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유기성)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	
		51-02-01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02	정수처리오니(무기성)
			51-02-03	하수처리오니(무기성)
		51-02-04	하수준설토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4-02	제강슬래그	
		51-04-99	그 밖의 광재류	
		51-05-99	그 밖의 분진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51-06-02	화학점결폐주물사	
		51-06-99	그 밖의 폐사	
		51-07-01	폐내화물	
		51-07-02	폐도자기조각	
		51-08-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09-01	안정화 처리물	
		51-09-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51-09-03	고화 처리물	
		51-09-04	킬레이트(Chelate) 처리물	
		51-09-99	그 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51-10-01	금속성폐촉매	
		51-10-02	페이온교환수지	
		51-10-03	폐멤브레인수지	
		51-10-99	그 밖의 폐촉매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51-12-01	폐석고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12-02	폐석회
		51-15-01	자동차 페타이어
		51-15-02	그 밖의 페타이어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51-17-01	동물사체
		51-17-02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한다)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51-17-04	폐패각
		51-17-05	폐모피류
		51-17-06	피혁가공잔재물
		51-17-08	동물성유지류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51-17-23	유박유잔재물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3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20-0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피, 톱밥, 대패밥 등을 말한다)
		51-20-03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4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5	목재가공공장 부산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9	산업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51-21-01	폐토사
		51-21-02	건설폐토석
		51-22-01	폐콘크리트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51-24-00	폐벽돌
		51-25-00	폐블록
		51-26-00	폐기와
		51-27-01	폐천연섬유
		51-27-02	폐합성섬유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8-02	폐종이류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28-03	폐벽지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51-30-01	폐유리
		51-30-99	그 밖의 폐유리
		51-31-00	폐타일
		51-32-00	폐보드류
		51-33-00	폐판넬
		51-37-01	가전제품회수폐냉매물질
		51-37-02	자동차회수폐냉매물질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51-37-99	그 밖의 폐냉매물질
		51-38-02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51-38-0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액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51-38-99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
		51-41-02	2차폐전지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제외한다)
		51-45-01	폐차파쇄잔재물
		51-45-02	폐차부품류
		51 45 03	그 밖의 폐차발생폐기물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지정 폐기물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3-02-00	분진
		03-06-01	안정화처리물
		03-06-02	시멘트고형화처리물
		03-06-03	고화처리물
		03-06-04	킬레이트(Chelate)처리물
		03-06-05	폐석면고형화처리물(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03-06-99	그 밖의 고형화·고화처리물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4-01-0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08-03-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의 것		
08-04-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이 아닌 것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유기성)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04	하수준설토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5-99	그 밖의 분진
		51-09-01	안정화 처리물
		51-09-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51-09-03	고화 처리물
		51-09-04	킬레이트(Chelate) 처리물
		51-09-99	그 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51-10-01	금속성폐촉매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51-17-24	초분류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20-01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51-21-01	폐토사
		51-22-01	폐콘크리트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51-24-00	폐벽돌
		51-27-02	폐합성섬유
		51-27-99	그 밖의 폐섬유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종합 건설업 (41)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3-02-00	분진
		03-03-01	샌드블라스트폐사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사업장 일반 폐기물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4-99	그 밖의 광채류
		51-05-99	그 밖의 분진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51-06-99	그 밖의 폐사
		51-07-01	폐내화물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51-12-01	폐석고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4-01	폐석분토사(석재·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응집 미립분을 포함한다)
		51-14-02	폐석재
		51-15-02	그 밖의 페타이어
		51-17-24	초분류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20-01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51-20-0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피, 톱밥, 대패밥 등을 말한다)	
	51-20-03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4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5	목재가공공장 부산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9	산업현장의 실의목재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51-20-10	건축현장 폐목재(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20-11	건축현장 폐목재(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12	건축현장 폐목재(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13	폐받침목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51-21-01	페토사	
		51-21-02	건설페토석	
		51-22-01	페콘크리트	
		51-22-02	콘크리트폐받침목	
		51-23-00	페아스팔트콘크리트	
		51-24-00	페벽돌	
		51-25-00	페블록	
		51-26-00	폐기와	
		51-27-01	폐천연섬유	
		51-27-02	폐합성섬유	
		51-28-02	폐종이류	
		51-28-03	페벽지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51-30-01	폐유리	
		51-31-00	페타일	
		51-32-00	페보드류	
		51-33-00	페판넬	
		51-35-00	폐전주(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51-40-01	폐분말소화기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51-41-01	1차폐전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41-02	2차폐전지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제외한다)	
		51-41-04	폐태양전지·전자기기폐이스트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전문직별 공사업 (42)	지정 폐기물	01-02-01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3-02-00	분진			
03-03-01	샌드블라스트폐사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사업장 일반 폐기물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07-01-01	홀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
		07-01-02	홀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
		07-02-00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집진필터 등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08-02-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
		08-03-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의 것
		08-04-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이 아닌 것
			51-01-08
	51-02-01		폐수처리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4-99		그 밖의 광재류
	51-05-99		그 밖의 분진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51-06-99		그 밖의 폐사
	51-07-01		폐내화물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51-12-01		폐석고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4-01		폐석분토사(석재·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응집 미립분을 포함한다)
	51-14-02		폐석재
	51-15-02		그 밖의 폐타이어
	51-17-24		초본류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20-01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51-20-0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피, 톱밥, 대패밥 등을 말한다)
	51-20-03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4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5	목재가공공장 부산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9	산업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51-20-10	건축현장 폐목재(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11	건축현장 폐목재(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12	건축현장 폐목재(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13	폐받침목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51-21-01	폐토사		
		51-21-02	건설폐토석		
		51-22-01	폐콘크리트		
		51-22-02	콘크리트폐받침목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51-24-00	폐벽돌		
		51-25-00	폐블록		
		51-26-00	폐기와		
		51-27-01	폐천연섬유		
		51-27-02	폐합성섬유		
		51-28-02	폐종이류		
		51-28-03	폐벽지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51-30-01	폐유리		
		51-31-00	폐타일		
		51-32-00	폐보드류		
		51-33-00	폐판넬		
		51-35-00	폐전주(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51-40-01	폐분말소화기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51-41-01	1차폐전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41-02	2차폐전지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제외한다)		
		51-41-04	폐태양전지·전자기기폐이스트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지정 폐기물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99	그 밖의 폐산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사업장 일반 폐기물		06-01-05	폐오일필터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11-01	폐흡착제
		51-11-03	폐활성탄
	51-15-01	자동차 폐타이어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지정 폐기물	01-01-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1-03-01	유기인계폐농약
		01-03-02	유기염소계폐농약
		01-03-03	카바메이트계(Carbamate)폐농약
		01-03-99	그 밖의 폐농약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01-01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03-01-02	납 열처리·야금(冶金)공정광재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03-01-04	철제조공정광재(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는 제외한다)
		03-01-99	그 밖의 광재
		03-02-00	분진
		03-03-01	점토점결폐주물사
		03-03-02	화학점결폐주물사
		03-03-03	샌드블라스트폐사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03-07-01	금속성폐촉매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04-01-0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폐락카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폐절삭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06-01-04	폐연료유
		06-01-05	폐오일필터
		06-01-06	기름함유 폐전선·폐케이블
		06-01-07	폐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을 제외한다)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09-02-00	연구·검사용폐시약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유기성)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09	보크사이트잔재물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4-01	고로슬래그
		51-04-02	제강슬래그
		51-04-03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51-04-04	선광공정광재
		51-04-99	그 밖의 광재류
		51-05-01	제철공정분진
		51-05-02	시멘트제조공정분진
		51-05-03	발전시설분진
		51-05-04	폐실리카 폼(규소철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51-05-99	그 밖의 분진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51-06-02	화학점결폐주물사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51-06-04	폐여과사
		51-06-99	그 밖의 폐사
		51-07-01	폐내화물
		51-08-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09-01	안정화 처리물
		51-09-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51-09-99	그 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51-10-01	금속성폐촉매
		51-10-99	그 밖의 폐촉매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2-01	폐석고
		51-12-02	폐석회
		51-13-03	석탄재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4-01	폐석분토사(석재·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응집 미립분을 포함한다)
		51-14-02	폐석재
		51-15-01	자동차 페타이어
		51-15-02	그 밖의 페타이어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51-17-01	동물사체
		51-17-02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한다)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51-17-04	폐패각
		51-17-05	폐모피류
		51-17-06	피혁가공잔재물
		51-17-07	동물털
		51-17-08	동물성유지류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51-17-21	주정박
		51-17-22	맥주박
		51-17-23	유박유잔재물
		51-17-24	초본류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3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19-00	왕겨 및 쌀겨
		51-20-01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51-20-0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피, 톱밥, 대패밥 등을 말한다)
		51-20-03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4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5	목재가공공장 부산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9	산업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20-10	건축현장 폐목재(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11	건축현장 폐목재(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12	건축현장 폐목재(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13	폐반침목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51-21-01	폐토사		
		51-21-02	건설폐토석		
		51-21-03	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		
		51-27-01	폐천연섬유		
		51-27-02	폐합성섬유		
		51-27-03	폐의류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9-04	폐금속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51-30-01	폐유리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0-03	페스마트유리		
		51-30-04	폐유리섬유		
		51-30-05	폐형광등과폐잔재물		
		51-30-99	그 밖의 폐유리		
		51-31-00	페타일		
		51-38-01	음식물류폐기물		
		51-39-00	폐사료		
		51-40-01	폐분말소화기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51-42-00	폐의약품류		
		51-45-01	폐차과폐잔재물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소매업; 자동차 제외 (47)	지정 폐기물	01-03-01	유기인계폐농약
				01-03-02	유기염소계폐농약
01-03-03	카바메이트계(Carbamate)폐농약				
01-03-99	그 밖의 폐농약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07-01	금속성폐촉매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6-01-04	폐연료유			
		09-02-00	연구·검사용폐시약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5-02	그 밖의 페타이어		
			51-17-01	동물사체		
			51-17-02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한다)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51-17-04	폐패각		
			51-17-07	동물털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51-21-01	폐토사		
			51-38-01	음식물류폐기물		
			51-39-00	폐사료		
			51-40-01	폐분말소화기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51-42-00	폐의약품류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지정 폐기물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05	폐오일필터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사업장 일반 폐기물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6-03	샌드블라스트페사
		51-15-01	자동차 페타이어
		51-15-02	그 밖의 페타이어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51-21-01	페토사
		51-30-01	폐유리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7-99	그 밖의 폐냉매물질
		51-38-01	음식물류폐기물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수상 운송업 (50)	지정 폐기물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99	그 밖의 폐산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5	폐오일필터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38-01	음식물류폐기물
51-38-02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항공 운송업 (51)	지정 폐기물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99	그 밖의 폐산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05	폐오일필터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8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3-01		폐합성수지류(페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11-01		폐흡착제
	51-15-02		그 밖의 페타이어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51-27-01		폐천연섬유
	51-27-02		폐합성섬유
	51-27-03		폐의류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8-01	음식물류폐기물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지정 폐기물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08-01	폐흡착제
		04-01-0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3-00	폐락카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05	폐오일필터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2-00	폐동식물유
		06-03-00	그 밖의 폐유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2	하수처리오니(유기성)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02-03	하수처리오니(무기성)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15-02	그 밖의 페타이어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9	산업현장의 실의목재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51-20-13	폐발침목
		51-21-01	페토사
		51-22-01	페콘크리트
		51-22-02	콘크리트폐발침목
		51-23-00	페아스팔트콘크리트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8-02	폐종이류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51-38-01	음식물류폐기물
		51-38-02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숙박업 (55)	지정 폐기물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3-05-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사업장 일반 폐기물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08-02-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6-99	그 밖의 폐사
		51-07-02	폐도자기조각
		51-11-01	폐흡착제
		51-11-03	폐활성탄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51-17-04	폐패각
		51-17-08	동물성유지류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51-17-24	초본류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20-01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0-01	폐유리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38-01	음식물류폐기물
		51-38-02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51-40-01	폐분말소화기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51-41-01	1차폐전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41-02	2차폐전지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음식점 및 주점업 (56)	지정 폐기물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99	그 밖의 폐산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11-01	폐흡착제
		51-11-03	폐활성탄
		51-13-01	연탄재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51-17-04	폐폐각
		51-17-08	동물성유지류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8-02	폐종이류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0-01	폐유리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8-01	음식물류폐기물
51-38-02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출판업 (58)	지정 폐기물	04-01-0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6-01-01	폐운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06-01-03	폐기계유· 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 냉동기유· 터어빈유· 베어링윤활유· 압축기유· 유압작동유· 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 그리스(grease)· 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2-00	폐동식물유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11-01	폐흡착제	
		51-11-03	폐활성탄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28-02	폐종이류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	지정 폐기물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 그리스(grease)· 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20-01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7-01	폐천연섬유	
		51-27-02	폐합성섬유	
		51-27-03	폐의류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28-02	폐종이류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0-01	폐유리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8-01	음식물류폐기물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방송업 (60)	지정 폐기물	02-01-02
02-01-99	그 밖의 폐산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7-03	폐의류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8-02	폐종이류		
		51-41-01	1차폐전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41-02	2차폐전지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제외한다)		
		51-41-04	폐태양전지·전자기기폐이스트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통신업 (61)	지정 폐기물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99	그 밖의 폐산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6-01-06	기름 함유 폐전선·폐케이블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7-02	폐도자기조각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20-01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2-01	폐콘크리트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51-28-02	폐종이류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30-01	폐유리		
		51-30-03	폐스마트유리		
		51-35-00	폐전주(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51-41-01	1차폐전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41-02	2차폐전지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제외한다)		
		51-41-04	폐태양전지·전자기기폐이스트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지정 폐기물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28-02	폐종이류
		51-29-01	고철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51-41-02	2차폐전지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제외한다)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정보 서비스업 (63)	지정 폐기물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99	그 밖의 폐산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사업장 일반 폐기물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28-02	폐종이류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금융업 (64)	지정 폐기물	02-01-02
02-01-99			그 밖의 폐산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3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51-41-01	1차폐전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41-02	2차폐전지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제외한다)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보험 및 연금업 (65)	지정 폐기물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99	그 밖의 폐산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3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51-41-01	1차폐전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41-02	2차폐전지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제외한다)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66)	지정 폐기물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99	그 밖의 폐산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3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51-41-01	1차폐전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41-02	2차폐전지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제외한다)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부동산업 (68)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02-00	분진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폐락카
		06-01-01	폐운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07-01-01	흘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
		07-01-02	흘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집진필터 등
	08-03-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의 것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5-99	그 밖의 분진
		51-07-01	폐내화물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13-02		액체연료연소재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7-24	초분류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20-01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1-01	폐토사
		51-22-01	폐콘크리트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51-24-00	폐벽돌
		51-25-00	폐블록
		51-26-00	폐기와
		51-30-01	폐유리
		51-30-04	폐유리섬유
		51-31-00	폐타일
		51-32-00	폐보드류
		51-33-00	폐판넬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51-40-01	폐분말소화기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 만약, 상기 이외의	
임대업; 부동산제외 (69)	지정 폐기물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99	그 밖의 폐산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폐락카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계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린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10-01		금속성폐촉매	
51-15-01	자동차 폐타이어		
51-15-02	그 밖의 폐타이어		
51-18-03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20-03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4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5	목재가공공장 부산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7-03	폐의류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28-02	폐종이류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30-01	폐유리
		51-37-01	가전제품회수폐냉매물질
		51-37-02	자동차회수폐냉매물질
		51-37-99	그 밖의 폐냉매물질
		51-40-01	폐분말소화기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51-41-02	2차폐전지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제외한다)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연구개발업 (70)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02	유리식각공정오니
		01-02-03	제지공정오니
		01-02-04	실리콘제조공정오니
		01-02-05	보크사이트잔재물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1-03-01	유기인계폐농약
		01-03-02	유기염소계폐농약
		01-03-03	카바메이트계(Carbamate)폐농약
		01-03-99	그 밖의 폐농약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05	LCD·반도체공정폐산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01-01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03-01-02	납 열처리·야금(冶金)공정광재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03-01-04	철제조공정광재(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는 제외한다)
		03-01-99	그 밖의 광재
		03-02-00	분진
		03-03-01	점토점결폐주물사
		03-03-02	화학점결폐주물사
		03-03-03	샌드블라스트폐사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03-04-01	폐내화물
		03-04-02	폐도자기조각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7-01	금속성폐촉매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폐락카
		06-01-01	폐운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폐절삭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빈유·베어링운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05	폐오일필터
		06-01-06	기름함유 폐전선·폐케이블
		06-01-07	폐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을 제외한다)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2-00	폐동식물유
		06-03-00	그 밖의 폐유
		07-01-02	훔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08-02-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
		08-03-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의 것
		08-04-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이 아닌 것
		09-01-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09-02-00	연구·검사용폐시약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10-11-00	격리의료폐기물
		10-12-01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2-02	병리계폐기물
		10-12-03	손상성폐기물
		10-12-04	생물·화학폐기물
		10-12-05	혈액오염폐기물
		10-12-06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1	정수처리오니(유기성)
		51-01-02	하수처리오니(유기성)
		51-01-03	분뇨처리오니
		51-01-04	가축분뇨처리오니
		51-01-05	펄프·제지공정오니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유기성)
		51-01-07	필프·제지폐수처리오니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02	정수처리오니(무기성)
		51-02-03	하수처리오니(무기성)
		51-02-04	하수준설토
		51-02-07	유리식각공정오니
		51-02-08	실리콘공정오니
		51-02-09	보크사이트잔재물
		51-02-06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석재·골재 생산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에 한한다)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4-01	고로슬래그
		51-04-02	제강슬래그
		51-04-03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51-04-04	선광공정광재
		51-04-99	그 밖의 광재류
		51-05-01	제철공정분진
		51-05-02	시멘트제조공정분진
		51-05-03	발전시설분진
		51-05-99	그 밖의 분진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51-06-02	화학점결폐주물사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51-06-04	폐여과사
		51-06-99	그 밖의 폐사
		51-07-01	폐내화물
		51-07-02	폐도자기조각
		51-08-02	사업장폐기물 조각시설 비산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조각시설 바닥재
		51-08-06	사업장폐기물 조각시설 조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10-01	금속성폐촉매
		51-10-02	페이온교환수지
		51-10-03	폐멤브레인수지
		51-10-99	그 밖의 폐촉매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51-12-01	폐석고
		51-12-02	폐석회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13-01	연탄재
		51-13-02	액체연료연소재
		51-13-03	석탄재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4-02	폐석재
		51-15-01	자동차 페타이어
		51-15-02	그 밖의 페타이어
		51-17-01	동물사체
		51-17-04	폐패각
		51-17-05	폐모피류
		51-17-07	동물털
		51-17-08	동물성유지류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51-17-21	주정박
		51-17-22	맥주박
		51-17-23	유박유잔재물
		51-17-24	초본류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3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20-01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51-20-02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피, 톱밥, 대패밥 등을 말한다)
		51-20-03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4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5	목재가공공장 부산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 목재 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9	산업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51-21-01	폐토사
		51-21-02	건설폐토석
		51-21-03	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
		51-22-01	폐콘크리트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51-27-01	폐천연섬유
		51-27-02	폐합성섬유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28-02	폐종이류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9-04	폐금속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51-30-01	폐유리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0-03	페스마트유리
		51-30-04	폐유리섬유
		51-30-05	폐형광등과쇄잔재물
		51-30-99	그 밖의 폐유리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51-37-99	그 밖의 폐냉매물질
		51-42-00	폐의약품류
		51-44-00	나노폐기물(나노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51-46-00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전문 서비스업 (71)	지정 폐기물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폐락카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3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20-09	산업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51-28-02	폐종이류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51-30-01	폐유리	
		51-30-99	그 밖의 폐유리	
		51-32-00	폐보드류	
		51-33-00	폐판넬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51-40-01	폐분말소화기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01-99	그 밖의 광재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09-01-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09-02-00	연구·검사용폐시약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11-03	폐활성탄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3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20-01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1-01	폐토사
		51-21-02	건설폐토석
		51-21-03	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
		51-28-02	폐종이류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폐락카
		09-01-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09-02-00	연구·검사용폐시약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10-12-01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2-02	병리계폐기물
		10-12-03	손상성폐기물
		10-12-04	생물·화학폐기물
	10-12-05	혈액오염폐기물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6-99	그 밖의 폐사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12-01	폐석고
		51-18-03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1-01	폐토사
		51-27-01	폐천연섬유
		51-27-02	폐합성섬유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28-02	폐종이류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51-30-01	폐유리
		51-30-99	그 밖의 폐유리
		51-32-00	폐보드류
		51-33-00	폐판넬
		51-39-00	폐사료
		51-42-00	폐의약품류
51-43-00	폐흑연가루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사업시설 관리 및 조정 서비스업 (74)	지정 폐기물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6-01-04	폐연료유
		06-01-05	폐오일필터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2-00	폐동식물유
	06-03-00	그 밖의 폐유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2-04	하수준설토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5-99		그 밖의 분진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7-24	초분류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20-01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51-21-01	폐토사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29-01	고철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51-37-99	그 밖의 폐냉매물질		
		51-40-01	폐분말소화기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지정 폐기물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03-02-00	분진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폐락카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05	폐오일필터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5-99	그 밖의 분진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3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28-02	폐종이류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29-04	폐금속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0-99	그 밖의 폐유리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02-00	분진
		03-04-01	폐내화물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폐락카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페절삭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05	폐오일필터
		06-01-06	기름함유 폐전선·폐케이블
		06-01-07	폐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을 제외한다)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08-02-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
		08-03-00	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의 것
		08-04-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이 아닌 것
		09-02-00	연구·검사용폐시약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10-12-02	병리계폐기물
		10-12-03	손상성폐기물
		10-12-04	생물·화학폐기물
		10-12-05	혈액오염폐기물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5-99	그 밖의 분진
		51-07-01	폐내화물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사업장 일반 폐기물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51-13-01	연탄재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5-01	자동차 페타이어
		51-15-02	그 밖의 페타이어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51-17-24	초본류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3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20-01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1-01	폐토사
		51-21-02	건설폐토석
		51-21-03	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
		51-22-01	폐콘크리트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51-24-00	폐벽돌
		51-25-00	폐블록
		51-27-02	폐합성섬유
		51-27-03	폐이류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8-02	폐종이류
		51-28-03	폐벽지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9-04	폐금속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51-30-01	폐유리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0-04	폐유리섬유
		51-30-99	그 밖의 폐유리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35-00	폐전주(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51-37-02	자동차회수폐냉매물질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51-37-99	그 밖의 폐냉매물질
		51-38-01	음식물류폐기물
		51-38-02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51-39-00	폐사료
		51-40-01	폐분말소화기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51-41-01	1차폐전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41-02	2차폐전지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제외한다)
		51-42-00	폐의약품류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교육 서비스업 (85)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02-00	분진
		03-04-01	폐내화물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7-01	금속성폐촉매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03-08-01	폐흡착제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폐락카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2	폐연마유·비수용성폐절삭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05	폐오일필터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2-00	폐동식물유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06-03-00	그 밖의 폐유
		09-01-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09-02-00	연구·검사용폐시약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10-12-01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2-02	병리계폐기물
		10-12-03	손상성폐기물
		10-12-04	생물·화학폐기물
		10-12-05	혈액오염폐기물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1	정수처리오니(유기성)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02	정수처리오니(무기성)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5-99	그 밖의 분진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51-06-02	화학점결폐주물사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51-06-04	폐여과사
		51-06-99	그 밖의 폐사
		51-07-01	폐내화물
		51-07-02	폐도자기조각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51-12-01	폐석고
		51-13-01	연탄재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7-01	동물사체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51-17-24	초분류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3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20-01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2-01	폐콘크리트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51-24-00	폐벽돌
		51-25-00	폐블록
		51-26-00	폐기와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8-02	폐종이류
		51-28-03	폐벽지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9-04	폐금속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51-30-01	폐유리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0-99	그 밖의 폐유리
		51-31-00	폐타일
		51-32-00	폐보드류
		51-33-00	폐판넬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51-37-99	그 밖의 폐냉매물질
		51-38-01	음식물류폐기물
		51-38-02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51-39-00	폐사료
		51-40-01	폐분말소화기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51-41-01	1차폐전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41-02	2차폐전지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제외한다)
		51-42-00	폐의약품류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보건업 (86)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03	폐질산
		02-01-04	폐불산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02-02-02	폐암모니아수
		02-02-03	폐수산화나트륨(고상)
		02-02-04	폐수산화칼륨(고상)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3-02-00	분진
		03-04-01	폐내화물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8-02	폐흡수제
		04-01-0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계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05	폐오일필터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09-01-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09-02-00	연구·검사용폐시약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10-11-00	격리의료폐기물
		10-12-01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2-02	병리계폐기물
		10-12-03	손상성폐기물
		10-12-04	생물·화학폐기물
		10-12-05	혈액오염폐기물
		10-12-06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5-99	그 밖의 분진
		51-07-01	폐내화물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업종	폐기물 분류 번호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11-03	폐활성탄
		51-12-01	폐석고
		51-13-02	액체연료연소재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51-17-01	동물사체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51-17-24	초분류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3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7-01	폐천연섬유
		51-27-02	폐합성섬유
		51-27-03	폐의류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8-02	폐종이류
		51-28-03	폐벽지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9-04	폐금속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51-30-01	폐유리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0-99	그 밖의 폐유리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51-38-01	음식물류폐기물
		51-38-02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51-40-01	폐분말소화기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51-41-01	1차폐전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41-02	2차폐전지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제외한다)
		51-42-00	폐의약품류
		51-46-00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지정 폐기물	06-01-04	폐연료유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10-12-01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2-02	병리계폐기물	
		10-12-03	손상성폐기물	
		10-12-04	생물·화학폐기물	
		10-12-05	혈액오염폐기물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16-00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51-17-24	초본류	
		51-20-01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7-03	폐의류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8-02	폐종이류	
		51-28-03	폐벽지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0-01	폐유리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0-99	그 밖의 폐유리	
		51-38-01	음식물류폐기물	
		51-42-00	폐의약품류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지정 폐기물	02-01-01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99			그 밖의 폐산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사업장 일반 폐기물		05-03-00	폐락카	
		06-01-04	폐연료유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09-01-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09-02-00	연구·검사용폐시약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17-01	동물사체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51-17-24	초본류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8-02	폐종이류	
		51-28-03	폐벽지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30-01	폐유리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0-99	그 밖의 폐유리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51-38-01	음식물류폐기물	
		51-39-00	폐사료	
		51-40-01	폐분말소화기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99	그 밖의 폐산
			03-02-00	분진
			03-04-01	폐내화물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8-01			폐흡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05-02-00	폐수성페인트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05	폐오일필터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4	가축분뇨처리오니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2-02	정수처리오니(무기성)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7-01	폐내화물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10-02	페이온교환수지
		51-10-03	페멜브레인수지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51-13-02	액체연료연소재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5-01	자동차 페타이어
		51-15-02	그 밖의 페타이어
		51-17-01	동물사체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51-17-24	초분류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51-18-03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1-01	폐토사
		51-22-01	폐콘크리트
		51-27-01	폐천연섬유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27-02	폐합성섬유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8-02	폐종이류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9-04	폐금속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51-30-01	폐유리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0-99	그 밖의 폐유리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51-37-99	그 밖의 폐냉매물질		
		51-38-01	음식물류폐기물		
		51-39-00	폐사료		
		51-40-01	폐분말소화기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협회 및 단체 (94)	지정 폐기물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99	그 밖의 폐산				
04-01-00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2-00	폐수성페인트				
05-03-00	폐락카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3-00	그 밖의 폐유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51-17-24		초분류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20-01		임목폐목재(건설공사,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을 말한다)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7-03		폐의류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28-01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28-02	폐종이류
		51-28-03	폐벽지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0-01	폐유리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7-03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51-38-01	음식물류폐기물
		51-40-01	폐분말소화기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수리업 (95)	지정 폐기물	01-02-01	폐수처리오니
		02-01-01	폐염산
		02-01-02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포함한다)
		02-01-99	그 밖의 폐산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1-00	폐유성페인트
		05-03-00	폐락카
		06-01-01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3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6-01-05	폐오일필터	
	06-01-99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3-00	그 밖의 폐유	
	07-01-01	훔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5-99	그 밖의 분진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51-07-01	폐내화물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51-08-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51-10-01		금속성폐촉매	
51-10-99		그 밖의 폐촉매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1-03	폐활성탄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5-01	자동차 페타이어
		51-15-02	그 밖의 페타이어
		51-18-03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51-20-06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51-20-07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0-08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를 말한다)
		51-27-01	폐천연섬유
		51-27-02	폐합성섬유
		51-27-03	폐의류
		51-27-99	그 밖의 폐섬유
		51-28-02	폐종이류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29-04	폐금속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51-30-01	폐유리
		51-30-99	그 밖의 폐유리
		51-37-01	가전제품회수폐냉매물질
		51-37-02	자동차회수폐냉매물질
		51-41-02	2차폐전지
		51-41-03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를 제외한다)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지정 폐기물	02-02-01	폐가성소다수
		02-02-99	그 밖의 폐알칼리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6-01-04	폐연료유
		06-03-00	그 밖의 폐유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사업장 일반 폐기물	51-01-08
	51-02-01		폐수처리오니(무기성)
	51-03-01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51-03-99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
	51-05-99		그 밖의 분진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51-17-24		초분류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27-03		폐의류
	51-28-02		폐종이류
	51-29-01		고철
	51-29-02		비철금속
	51-29-03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업종	폐기물 분류	분류 번호	폐기물 종류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51-30-02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30-99	그 밖의 폐유리
		51-38-01	음식물류폐기물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가구내 고용활동 (97)	지정 폐기물	-	-
	사업장 일반 폐기물	-	-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수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98)	지정 폐기물	-	-
	사업장 일반 폐기물	-	-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국제 및 외국기관 (99)	지정 폐기물	-	-
	사업장 일반 폐기물	-	-
※ 만약, 상기 이외의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4’ 를 참조하여 해당폐기물의 분류번호 부여			

부록 4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9차_2016년 7월 21일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는 주기적으로 개정됨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자료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01	농업	011	작물 재배업	011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2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01122	화훼작물 재배업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3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01131	과실작물 재배업
								01132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0114	기타 작물 재배업	01140	기타 작물 재배업
						0115	시설작물 재배업	01151	콩나물 재배업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012	축산업	0121	소 사육업	01211	젖소 사육업
								01212	육우 사육업
						0122	양돈업	01220	양돈업
						0123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01231	양계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01239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0129	기타 축산업	01291	말 및 양 사육업
								01299	그외 기타 축산업
				013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30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300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4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1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01412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후 서비스업
						0142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20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5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15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150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2	임업	020	임업	0201	영림업	02011	임업용 종묘 생산업
								02012	육림업
						0202	벌목업	02020	벌목업
						0203	임산물 채취업	02030	임산물 채취업
						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02040	임업 관련 서비스업
		03	어업	031	어로 어업	0311	해면 어업	03111	원양 어업
								03112	연근해 어업
						0312	내수면 어업	03120	내수면 어업
				032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0321	양식 어업	03211	해면 양식 어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03212	내수면 양식 어업
								03213	수산물 부화 및 종묘 생산업
						0322	어업 관련 서비스업	03220	어업 관련 서비스업
B	광업 (05 ~ 08)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1	석탄 광업	0510	석탄 광업	05100	석탄 광업
				052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52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6	금속 광업	061	철 광업	0610	철 광업	06100	철 광업
				062	비철금속 광업	0621	우라늄 및 토륨 광업	06210	우라늄 및 토륨 광업
						0629	기타 비철금속 광업	06291	금·은 및 백금 광업
								06292	연 및 아연 광업
								06299	그외 기타 비철금속 광업
		07	비금속광 물 광업; 연료 용 제외	071	토사석 광업	0711	석회석 및 점토 광업	07111	석회석 광업
								07112	고령토 및 기타 점토 광업
						0712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	07121	건설용 석재 채취업
								07122	건설용 쇄석 생산업
								07123	모래 및 자갈 채취업
				072	기타 비금속광 물 광업	0721	화학용 및 비료원료	07210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용 광물 광업		
						0722	소금 채취업	07220	소금 채취업
						0729	그외 기타 비금속광 물 광업	07290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080	광업 지원 서비스업	0801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	0801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
						0809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08090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C	제조업 (10 ~ 33)	10	식료품 제조업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1	도축업	10110	도축업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9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10301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처리업		처리업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05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 류 제조업	1050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 류 제조업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5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106	곡물가공 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061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11	곡물 도정업
								10612	곡물 제분업
								10613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1062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11	떡류 제조업
								10712	빵류 제조업
								10713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제조업
						1072	설탕 제조업	10720	설탕 제조업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791	커피 가공업
								10792	차류 가공업
								107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0798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10799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8	동물용 사료 및	1080	동물용 사료 및	1080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조제식품 제조업		조제식품 제조업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11	알콜음료 제조업	1111	발효주 제조업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1112	청주 제조업
								11113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112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121	주정 제조업
								11122	소주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2	비알콜음 료 및 얼음 제조업	1120	비알콜음 료 및 얼음 제조업	11201	얼음 제조업
								11202	생수 생산업
								1120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20	담배 제조업	1200	담배 제조업	12001	담배 채건조업
								12002	담배제품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31	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	1310	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	13101	면 방직업
								13102	모 방직업
								13103	화학섬유 방직업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3109	기타 방직업
				132	식물직조 및 식물제품	1321	식물 직조업	13211	면직물 직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제조업				
								13212	모직물 직조업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3214	견직물 직조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 직조업
						1322	직물제품 제조업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
								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224	천막 및 기타캔버스 제품 제조업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33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1331	편조원단 제조업	13310	편조원단 제조업
						1332	편조제품 제조업	13320	편조제품 제조업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01	솜 및 실 염색가공업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 가공업
								13404	섬유사 및 직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호부처리업
								13409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91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92	끈, 로프, 망 및 끈가공품 제조업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13922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제조업
						1399	그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3994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14	의복, 의복액세 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1	봉제의복 제조업	1411	정장 제조업	14111	남자용 정장 제조업
								14112	여자용 정장 제조업
						1412	내의 및 잠옷 제조업	14120	내의 및 잠옷 제조업
						1413	한복 제조업	14130	한복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1419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14199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20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201	원모피 가공업
								14202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14203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
				143	편조의복 제조업	1430	편조의복 제조업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144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1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14419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9	기타 의복액세 서리 제조업	14491	모자 제조업
								14499	그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1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11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1512	핸드백, 가방 및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9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2	신발 및 신발부분 품 제조업	1521	신발제조 업	15211	구두류 제조업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1522	신발부분 품 제조업	15220	신발부분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 구제외	16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10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101	일반 제재업
								16102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16103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162	나무제품 제조업	1621	박판, 합판 및 강화목제 품 제조업	16211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제조업
								16212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1622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21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3	목재 상자, 드럼 및	16231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적재판 제조업		
								16232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1629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291	목재 도구 및 기구 제조업
								16292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16293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16299	그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3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30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301	코르크 제품 제조업
								16302	돛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1	펄프 제조업	17110	펄프 제조업
						1712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7122	인쇄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2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1721	골판지 및 골판지상	17210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용기 제조업		자 제조업		
						1722	종이포대, 판지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90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7909	그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1811	인쇄업	18111	경 인쇄업
								18112	스크린 인쇄업
								18119	기타 인쇄업
						1812	인쇄관련 산업	18121	제판 및 조판업
								18122	제책업
								181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182	기록매체 복제업	1820	기록매체 복제업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	191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10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품 제조업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1921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1	운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1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20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20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20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0202	복합비료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2020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30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1	살충제 및 기타농약 제조업	204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2042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22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23	인쇄잉크 제조업
								20424	회화용 물감 제조업
						2043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33	화장품 제조업
								20434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2049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0492	가공 및 정제업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5	화학섬유 제조업	2050	화학섬유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0502	재생섬유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1	기초 의약품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	기초 의약품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1	의료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	의약품 제조업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	한의원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원약품 제조업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 제품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 제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1	고무제품 제조업	2211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22112	타이어 재생업
						2219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191	산업용 비경화고무제 품 제조업
								22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22199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2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1	1차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222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2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2223	포장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224	기계장비	22240	기계장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5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50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9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311	판유리 제조업	23110	판유리 제조업
						2312	산업용 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12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3199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321	일반도자 기 제조업	23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3212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23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2321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2322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21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23229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323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1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9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2331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3311	시멘트 제조업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332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3322	레미콘 제조업
								23323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23324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2332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23326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23329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23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1	석제품 제조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2399	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91	아스콘 제조업
								23992	연마재 제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3994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41	1차 철강 제조업	241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4111	제철업
								24112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412	철강 압연, 압출 및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연신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3	철강관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9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24199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2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1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연신제품 제조업
						2429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	금속 주조업	2431	철강 주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	비철금속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5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기 계 및 가구 제외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 기 제조업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25113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2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 용기 제조업	25121	중양난방보일 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3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 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2	무기 및 총포탄	2520	무기 및 총포탄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제조업		제조업		
				259	기타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2591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 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593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25931	날붙이 제조업
								25932	일반철물 제조업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25934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2594	금속파스 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41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5942	금속 스프링 제조업
								25943	금속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가공제품 제조업
						2599	그외 기타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5992	금고 제조업
								25993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25994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25995	금속표시판 제조업
								2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611	전자집적 회로 제조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 터 및 유사 반도체소 자 제조업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621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2	인쇄회로 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관 제조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1	전자관 제조업
								26292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3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26295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6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31	컴퓨터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2632	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2641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2651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2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6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1	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3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	측정,	2721	측정,	27211	항행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73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2731	안경 제조업	27310	안경 제조업
						2732	광학기기 및 사진장비 제조업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2732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27329	기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광학기기 제조업
				274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2740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27401	시계제조업
								27402	시계부품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 공급 · 제어 장치 제조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 장치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3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2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 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 반 제조업
				28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2841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2	조명장치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285	가정용 기기 제조업	2851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2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291	일반 목적용	2911	내연기관 및 터빈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장비 제조업		기계 제조업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	유압기기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913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29141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5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6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취급 장비 제조업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29162	승강기 제조업
								29163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취급장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제조업
						2917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 기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교환 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8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9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1	일반저울 제조업
								29192	용기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29193	자동판매기 및 화폐교환기 제조업
								29194	분사기및소화 기 제조업
								29195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업
								29199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특수	2921	농업 및	29210	농업 및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목적용 기계 제조업		임업용 기계 제조업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2	가공공작 기계 제조업	29221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29222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3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4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1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2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2925	음·식료 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50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6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2927	반도체 및 평판디스 플레이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8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	기타 특수목적 용 기계 제조업	29291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1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2	자동차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203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303	자동차 부품 제조업	3031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9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1	선박 건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2	철도장비 제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 제조업
				31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31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제조업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9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2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31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20	가구 제조업	3201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	32011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32012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3202	목재가구 제조업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32022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320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3209	기타 가구 제조업	32091	금속 가구 제조업
								32099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3311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2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2	악기 제조업	3320	악기제조업	33201	피아노 제조업
								33202	현악기 제조업
								33203	전자악기 제조업
								33204	국악기 제조업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333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3330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3303	낚시 및 수렵용품 제조업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33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40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339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3391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2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3393	가발, 장식용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33932	조화 및 모조장식품 제조업
								33933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
								33934	교시용 모형 제조업
						33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33991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33992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33993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33994	비 및 슴 제조업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5 ~ 36)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1	전기업	3511	발전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35112	수력 발전업
								35113	화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3512	송전 및 배전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352	가스 제조 및	3520	가스 제조 및	3520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배관공급업		배관공급업		
				353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	353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
		36	수도사업	360	수도사업	3601	생활용수공급업	36010	생활용수공급업
						3602	산업용수공급업	36020	산업용수공급업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 ~ 39)	37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370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3701	하수 및 폐수처리업	37011	하수 처리업
								37012	폐수 처리업
						3702	분뇨 및 축산분뇨처리업	37021	분뇨 처리업
								37022	축산분뇨처리업
		38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1	폐기물수집운반업	3811	지정의 폐기물수집운반업	38110	지정의 폐기물수집운반업
						3812	지정 폐기물수집운반업	38120	지정 폐기물수집운반업
						3813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38130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382	폐기물처리업	3821	지정의 폐기물처리업	38210	지정의 폐기물처리업
						3822	지정 폐기물처리업	38220	지정 폐기물처리업
						3823	건설 폐기물	38230	건설 폐기물처리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처리업		
						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38240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383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3830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38301	금속원료 재생업
								38302	비금속원료 재생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F	건설업 (41 ~ 42)	41	종합 건설업	411	건물 건설업	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	41111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
								41112	아파트 건설업
						4112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1121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41122	공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41129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12	토목 건설업	4121	지반조성 건설업	41210	지반조성 건설업
						4122	토목시설물 건설업	41221	도로 건설업
								41222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41223	수로, 댐 및 급·배수시설 건설업
								41224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건설업
								41225	산업플랜트 건설업
								41226	조경 건설업
								4122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 업	4211	건물 및 건축물 해체 공사업	42110	건물 및 건축물 해체 공사업
						4212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 업	42121	토공사업
								42122	보링, 그라우팅 및 굴정 공사업
								42123	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 공사업
								42129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4213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 업	42131	철골 공사업
								42132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42133	조적 및 석축 공사업
								42134	포장 공사업
								42135	철도궤도 전문공사업
								42136	수중 공사업
								42137	비계 및 형틀 공사업
								42139	기타 시설물 축조관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전문공사업
				422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220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42203	방음 및 내화 공사업
								42204	소방시설 공사업
								42209	기타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4231	전기 공사업	42311	일반전기 공사업
								42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4232	통신 공사업	42321	일반 통신 공사업
								42322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 리 공사업	4241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42411	도장 공사업
								42412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4242	유리 및 창호 공사업	42420	유리 및 창호 공사업
						4249	기타 건축마무 리 공사업	42491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42492	건물용 금속공작물 설치 공사업
								42499	그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425	건설장비	4250	건설장비	42500	건설장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운영업		운영업		운영업
G	도매 및 소매업 (45~47)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1	자동차 판매업	4511	자동차 신제품 판매업	45110	자동차 신제품 판매업
						4512	중고 자동차 판매업	45120	중고 자동차 판매업
				452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21	자동차신제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211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45219	기타 자동차신제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22	자동차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220	자동차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3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4530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45301	모터사이클 및 부품 도매업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1	상품중개업	4610	상품중개업	46101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중개업
								46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46103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46104	기계장비 중개업
								46105	상품종합 중개업
								46109	기타 상품 중개업
				462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4620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46201	곡물 도매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도매업		도매업		
								46202	종자 및 묘목 도매업
								46203	사료 도매업
								46204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
								46205	산동물 도매업
								4620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463	음·식료 품 및 담배 도매업	4631	비가공 식품 도매업	46311	과실 및 채소 도매업
								46312	육류 도매업
								46313	수산물 도매업
								46319	기타 비가공 식품 도매업
						4632	가공식품 도매업	4632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46322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46323	빵 및 과자 도매업
								46324	낙농품 도매업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4633	음료 및 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2	비알콜음료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	가정용품 도매업	4641	가정용 섬유, 의복 및	46411	가정용 섬유 및 실 도매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의복액세서리 도매업		
								46412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46413	셔츠 및 외의 도매업
								46414	유아용 의류 도매업
								46415	내의 도매업
								46416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
								46417	의복액세서리 및 모조장신품 도매업
								46419	기타 가정용 섬유 및 직물제품 도매업
						4642	신발 도매업	46420	신발 도매업
						4643	조명기구, 가정용 가구 및 비전기식 가정용기 기 도매업	46431	가정용 가구 도매업
								46432	전구·램프 및 조명장치 도매업
								46433	가정용 요업제품, 비전기식 주방용품 및 날붙이 도매업
								46439	기타 비전기식 가정용 기기 및 기구 도매업
						4644	의약품, 의료용품	46441	의약품 도매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및 화장품 도매업		
								46442	의료용품 도매업
								46443	화장품 도매업
								46444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
						4645	종이, 인쇄물 및 문구용품 도매업	46451	종이제품 도매업
								46452	문구용품 도매업
								46453	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
						4646	오락, 취미 및 경기용품 도매업	46461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46462	악기 도매업
								46463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4646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46465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4649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46491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업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46493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46499	그외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465	기계장비 및 관련	4651	컴퓨터 및	46510	컴퓨터 및 주변장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물품 도매업		주변장치, 소프트웨 어 도매업		소프트웨어 도매업
						4652	가전제품,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46521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46522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465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531	농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532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533	공작기계 도매업
								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59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591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46592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
								46593	수송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594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46599	그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6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4661	일반 건축자재 도매업	46611	원목 및 건축관련 목제품 도매업
								46612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46613	유리 및 창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도매업
						4662	철물 및 냉·난방 장치 도매업	46621	배관 및 냉·난방장치 도매업
								46622	철물 및 수공구 도매업
						4669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46691	도료 도매업
								46692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
								46699	그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467	기타 전문 도매업	4671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6711	고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6712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6713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672	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도매업	46721	1차 금속제품 도매업
								46722	금속광물 도매업
						467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46731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6732	비료 및 농약 도매업
								4673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도매업
								46739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4674	방직용	46741	방직용 섬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섬유, 사 및 직물 도매업		및 사 도매업
								46742	직물 도매업
						4679	재생용 재료 및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46791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46799	그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468	상품 종합 도매업	4680	상품 종합 도매업	46800	상품 종합 도매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71	종합 소매업	4711	대형 종합 소매업	47111	백화점
								47119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4712	음·식료 품 위주 종합 소매업	47121	슈퍼마켓
								47122	체인화 편의점
								47129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4719	그외 기타 종합 소매업	47190	그외 기타 종합 소매업
				472	음·식료 품 및 담배 소매업	4721	식료품 소매업	47211	곡물 소매업
								47212	육류 소매업
								47213	수산물 소매업
								47214	과실 및 채소 소매업
								47215	빵 및 과자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소매업
								47216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47219	기타 식료품 소매업
						4722	음료 및 담배 소매업	47221	음료 소매업
								47222	담배 소매업
				473	정보통신 장비 소매업	473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 어 및 통신기기 소매업	4731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47312	통신기기 소매업
						4732	가전제품 소매업	47320	가전제품 소매업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4741	섬유, 직물, 의복 및 의복액세 서리 소매업	47411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47412	한복 소매업
								47413	남녀용 정장 소매업
								47414	유아용 의류 소매업
								47415	내의 소매업
								47416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47419	기타 섬유, 직물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
						4742	신발 소매업	47420	신발 소매업
						4743	가방 및 기타	4743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가죽제품 소매업		소매업
				47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4751	철물, 페인트, 유리 및 건설자재 소매업	47511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47512	기계공구 소매업
								47513	벽지 및 장판류 소매업
								47519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4752	가구 소매업	47520	가구 소매업
						4759	그외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47591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47592	식탁 및 주방용품 소매업
								47593	악기 소매업
								475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4761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업	47611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47612	문구용품 소매업
						4762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47620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4763	스포츠용 품 소매업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4764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477	연료 소매업	4771	차량용 연료 소매업	47711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47712	차량용 가스 충전업
						4772	가정용 연료 소매업	47721	가정용 고체연료 소매업
								47722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47723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4781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47812	의료용 기구 소매업
								47813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4782	사무용 기기, 사진장비 및 정밀기기 소매업	47821	사무용 기기 소매업
								47822	안경 소매업
								47823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47829	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478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4784	예술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842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4785	그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47851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47852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4785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4786	중고상품 소매업	47861	중고가구 소매업
								47862	중고 가전제품 소매업
								47869	기타 중고상품 소매업
				479	무점포 소매업	4791	통신 판매업	47911	전자상거래업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4792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20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9	기타 무점포 소매업	47991	자동판매기 운영업
								47992	계약매달 판매업
								47993	방문 판매업
								47999	그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H	운수업 (49~52)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1	철도운송 업	4910	철도운송 업	49100	철도운송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492	육상 여객 운송업	4921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49211	도시철도 운송업
								49212	시내버스 운송업
								49219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4922	시외버스 운송업	49220	시외버스 운송업
						4923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49231	택시 운송업
								49232	전세버스 운송업
								49233	장의차량 운영업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493	도로 화물 운송업	4931	화물자동 차 운송업	4931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12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9	기타 도로화물 운송업	49390	기타 도로화물 운송업
				494	소화물 전문 운송업	4940	소화물 전문 운송업	49401	택배업
								49402	늘찬 배달업
				495	파이프라인 운송업	4950	파이프라인 운송업	49500	파이프라인 운송업
		50	수상 운송업	501	해상 운송업	5011	외항 운송업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5012	내항 운송업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50122	내항 화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운송업
						5013	기타 해상 운송업	50130	기타 해상 운송업
				502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5020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50201	내륙 수상 여객 운송업
								50202	내륙 수상 화물 운송업
								50203	항만내 운송업
								50209	기타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51	항공 운송업	511	정기 항공 운송업	5110	정기 항공 운송업	51100	정기 항공 운송업
				512	부정기 항공 운송업	5120	부정기 항공 운송업	51200	부정기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10	보관 및 창고업	52101	일반 창고업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52103	농산물 창고업
								52104	위험물품 보관업
								5210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529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1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11	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12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13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52919	기타 육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2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2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52929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3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31	공항 운영업
								52939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4	화물 취급업	52941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52942	수상 화물 취급업
						5299	그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52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55	숙박업	551	숙박시설 운영업	5511	관광숙박 시설 운영업	55111	호텔업
								55112	여관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5511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559	기타 숙박업	5590	기타 숙박업	55901	기숙사 운영업
								55909	그외 기타 숙박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56	음식점 및 주점업	561	음식점업	5611	일반 음식점업	56111	한식 음식점업
								56112	중식 음식점업
								56113	일식 음식점업
								56114	서양식 음식점업
								5611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612	기관구내 식당업	56120	기관구내식당 업
						5613	출장 및 이동 음식업	561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56132	이동 음식업
						5619	기타 음식점업	56191	제과점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6193	치킨 전문점
								5619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562	주점 및 비알콜음 료점업	5621	주점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6219	기타 주점업
						5622	비알콜 음료점업	56220	비알콜 음료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 (58 ~ 63)	58	출판업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1	서적 출판업	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58112	만화 출판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58119	기타 서적 출판업
						5812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 물 출판업	58121	신문 발행업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3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5819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	소프트웨 어 개발 및 공급업	5821	게임 소프트웨 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온라인·모바 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 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 어 개발 및 공급업
		59	영상·오 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 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 그램 제작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5914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59141	영화관 운영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5920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0	방송업	601	라디오 방송업	6010	라디오 방송업	60100	라디오 방송업
				602	텔레비전 방송업	6021	지상파 방송업	60210	지상파 방송업
						6022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0222	유선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1	통신업	611	우편업	6110	우편업	61100	우편업
				612	전기통신업	6121	유선통신업	61210	유선통신업
						6122	무선통신업	61220	무선통신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6123	위성통신업	61230	위성통신업
						6129	기타 전기통신업	61291	통신 재판매업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3	정보서비스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1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1	뉴스 제공업	63910	뉴스 제공업
						6399	그외	63991	데이터베이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기타 정보 서비스업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9	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64 ~ 66)	64	금융업	641	은행 및 저축기관	6411	중앙은행	64110	중앙은행
						6412	일반은행	64121	국내은행
								64122	외국은행
						6413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64131	신용조합
								64132	상호저축은행
								64139	기타 저축기관
				642	투자기관	6420	투자기관	64201	자산운용회사
								64209	기타 투자기관
				649	기타 금융업	6491	여신금융업	64911	금융리스업
								64912	개발금융기관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64919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
						6499	그외 기타 금융업	64991	기금 운영업
								64992	금융지주회사
								64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51	보험업	6511	생명 보험업	65110	생명 보험업
						6512	손해 및 보증 보험업	65121	손해 보험업
								65122	보증 보험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6513	사회보장 보험업	65131	건강 보험업
								65139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652	재 보험업	6520	재 보험업	65200	재 보험업
				653	연금 및 공제업	6530	연금 및 공제업	65301	개인 공제업
								65302	사업 공제업
								65303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661	금융지원 서비스업	6611	금융시장 관리업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6612	증권 및 선물 중개업	66121	증권 중개업
								66122	선물 중개업
						6619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66191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업
								66192	투자 자문업
								66199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662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620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6201	손해사정업
								66202	보험대리 및 중개업
								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 69)	68	부동산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1	부동산 임대업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6812	부동산	68121	주거용 건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개발 및 공급업		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6821	부동산 관리업	68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8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822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68222	부동산 감정평가업
		69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1	운송장비 임대업	6911	자동차 임대업	69110	자동차 임대업
						6919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69190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692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69210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6922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69220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6929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69291	서적 임대업
								69292	의류 임대업
								69299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693	산업용 기계 및	6931	건설 및 토목공사	69310	건설 및 토목공사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장비 임대업		용 기계장비 임대업		기계장비 임대업
						6932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693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69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69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694	무형재산 권 임대업	6940	무형재산 권 임대업	69400	무형재산권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 73)	70	연구개발 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 업	7011	자연과학 연구개발 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	공학 연구개발 업	70121	전기·전자공 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 업	70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 업	70201	경제학 연구개발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 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0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01	변호사업
								71102	변리사업
								71103	법무사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7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0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01	공인회계사업
								71202	세무사업
								71209	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
				713	광고업	7131	광고 대행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	기타 광고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71393	광고물 작성업
								71399	그외 기타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업	714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 팅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71511	제조업 회사본부
								71519	기타 산업 회사본부
						7152	비금융 지주회사	71520	비금융 지주회사
						7153	경영컨설 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1532	공공관계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 링 및 기타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 링 및 관련기술	7211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과학기술 서비스업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91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2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 업	72921	측량업
								72922	제도업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
								72924	지도제작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10	수의업	73100	수의업
				732	전문디자인업	7320	전문디자인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디자인업
				733	사진 촬영 및 처리업	7330	사진 촬영 및 처리업	73301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73303	사진 처리업
				739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1	매니저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4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 75)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74211	건축물 일반 청소업
								74212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742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74220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743	조경 관리 및 유지	7430	조경 관리 및 유지	7430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서비스업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11	고용알선업	75110	고용알선업
						7512	인력공급업	75120	인력공급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21	여행사업	75211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75212	국내 여행사업
						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7531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3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11	문서 작성업
								75912	복사업
								75919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9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75999	그외 기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1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8411	일반 공공 행정	84111	입법기관
								84112	중앙 최고 집행기관
								84113	지방행정 집행기관
								84114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84119	기타 일반 공공 행정
						8412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8412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842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8421	사회서비 스 관리 행정	84211	교육 행정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84213	환경 행정
								84214	보건 및 복지 행정
								84219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8422	노동 및 산업진흥 행정	84221	노동 행정
								84222	농림수산 행정
								84223	건설 및 운송 행정
								84224	통신 행정
								84229	기타 산업진흥 행정
				843	외무 및 국방 행정	8431	외무 행정	84310	외무 행정
						8432	국방 행정	84320	국방 행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844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8440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84401	법원
								84402	검찰
								84403	교도기관
								84404	경찰
								84405	소방서
								84409	기타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845	사회보장 행정	8450	사회보장 행정	84500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85)	85	교육 서비스업	851	초등 교육기관	8511	유아 교육기관	85110	유아 교육기관
						8512	초등학교	85120	초등학교
				852	중등 교육기관	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85211	중학교
								85212	일반 고등학교
						8522	기술 및 직업 중등 교육기관	85221	상업 및 정보산업 고등학교
								85222	공업 고등학교
								85229	기타 기술 및 직업 고등학교
				853	고등 교육기관	8530	고등 교육기관	85301	전문대학
								85302	대학교
								85303	대학원
				854	특수학교, 외국인학 교 및 대안학교	8541	특수학교	85410	특수학교
						8542	외국인 학교	85420	외국인 학교
						8543	대안학교	85430	대안학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855	일반 교습 학원	8550	일반 교습 학원	85501	일반 교과 학원
								85502	외국어학원
								85503	방문 교육 학원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
								85509	기타 일반 교습학원
				856	기타 교육기관	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 션 교육기관	85611	스포츠 교육기관
								85612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8562	예술 학원	85620	예술 학원
						8563	사회교육 시설	85630	사회교육시설
						8564	직원훈련 기관	85640	직원훈련기관
						8565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85651	운전학원
								85659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9	그외 기타 교육기관	85691	컴퓨터 학원
								856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857	교육지원 서비스업	8570	교육지원 서비스업	85701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85709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86	보건업	861	병원	8610	병원	86101	종합 병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86102	일반 병원
								86103	치과 병원
								86104	한방 병원
				862	의원	8620	의원	86201	일반 의원
								86202	치과 의원
								86203	한의원
								86204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863	공중 보건 의료업	8630	공중 보건 의료업	86300	공중 보건 의료업
				869	기타 보건업	8690	기타 보건업	86901	앰블런스 서비스업
								86902	유사 의료업
								86909	그외 기타 보건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87112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8712	심신장애 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1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2	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1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9	그외 기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1	보육시설 운영업	87210	보육시설 운영업
						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87291	직업재활원 운영업
								87299	그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91)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11	공연시설 운영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2	공연단체	90121	연극단체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0123	기타 공연단체
						9013	자영 예술가	90131	공연 예술가
								90132	비공연 예술가
						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191	공연 기획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90199	그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90211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
								90212	독서실 운영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90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9029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90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	스포츠 서비스업	9111	경기장 운영업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91112	실외 경기장 운영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122	스키장 운영업
						9113	기타 스포츠시 설 운영업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91133	수영장 운영업
								91134	볼링장 운영업
								91135	당구장 운영업
								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91139	그외 기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91191	스포츠 클럽 운영업
								91199	그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2	오락장 운영업	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9122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29	기타 오락장 운영업
						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31	낚시장 운영업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탱업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탱업
						912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92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91293	기원 운영업
								912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및단 체,수리 및 기타	94	협회 및 단체	941	산업 및 전문가 단체	9411	산업 단체	94110	산업 단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개인 서비스업 (94~96)								
						9412	전문가 단체	94120	전문가 단체
				942	노동조합	9420	노동조합	94200	노동조합
				949	기타 협회 및 단체	9491	종교 단체	94911	불교 단체
								94912	기독교 단체
								94913	천주교 단체
								94914	민족종교 단체
								94919	기타 종교 단체
						9492	정치 단체	94920	정치 단체
						9493	시민운동 단체	94931	환경운동 단체
								94939	기타 시민운동 단체
						9499	그외 기타 협회 및 단체	94990	그외 기타 협회 및 단체
		95	수리업	951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511	일반 기계 수리업	95111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5119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512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95121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95122	통신장비 수리업
								95123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952	자동차 및	9521	자동차 수리 및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모터사이클 수리업		세차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213	자동차 세차업
						9522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20	모터사이클 수리업
				953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531	가전제품 수리업	95310	가전제품 수리업
						9539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5391	신발,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95392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95399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9611	이용 및 미용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미용업
								96113	피부미용업
								96119	기타미용업
						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96121	욕탕업
								96122	마사지업
								96129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969	그외 기타 개인	9691	세탁업	96911	산업용 세탁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서비스업				
								96912	가정용 세탁업
								96913	세탁물 공급업
						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96922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96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개인 서비스업	96991	예식장업
								96992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96993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96994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96995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96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97	가구내 고용활동	970	가구내 고용활동	9700	가구내 고용활동	97000	가구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981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9810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서비스 생산활동						
				982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9820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99)	99	국제 및 외국기관	990	국제 및 외국기관	9900	국제 및 외국기관	99001	주한 외국공관
								99009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폐기물 분류체계 및 분류방법 설명서

발행일	2017년		
발행처	국립환경과학원(www.nier.go.kr)		
편 집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	신선경	부 장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김기현	과 장
	국립환경과학원 폐자원에너지연구과	전태완	과 장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강영렬	연 구 관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연진모	연 구 사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김용준	전문위원
	인하대학교 특성화대학원	민달기	교 수
	경기대학교	이승희	교 수
문의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 032-560-7506)	(☎ 032-560-7511)

